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seo.incheon.kr/>

선	기관장
람	

제1608호 2021. 7. 12(월)

차 례

조 례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885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 — 1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886호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 —— 4

규 칙

- 인천광역시서구 규칙 제1026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
----- 5
- 인천광역시서구 규칙 제1027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 규칙 - 15

훈 령

- 인천광역시서구 훈령 제366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개정 규정 - 24

예 규

- 인천광역시서구 예규 제102호 인천광역시 서구 성희롱 성폭력 예방 지침 전부개정 지침
----- 45

고 시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126호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 ----- 59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127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 61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128호 도로구역 결정 고시 ----- 65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129호 롯데우림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결정
(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69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130호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문 ----- 78

차 례

공 고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235호 인천광역시 서구 서로이음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80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250호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91

발행 : 인천광역시서구

편집 : 홍보정책담당관 [032-560-4146]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21년 7월 12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885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도시관리국”을 “도시주택국”으로 한다.

제5조의5제1항 중 “홍보정책담당관, 도시기획담당관”을 “홍보정책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32호부터 제34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25. 경관 사무

제8조의 제목 “(도시관리국)”을 “(도시주택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도시관리국에 도로과”를 “도시주택국에 도로과, 도시계획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관리국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

제8조제2항에 제93호부터 제9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93. 도시계획, 도시정비 및 재개발 계획 수립
- 94. 개발제한구역 관리
- 95.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관리
- 96. 도시정비 사무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 서구 스마트에코시티 구현을 위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도시관리국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

② 인천광역시 서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 중 “도시관리국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

③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중 “도시관리국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

④ 인천광역시 서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중 “경제에너지과, 도시기획담당관”을 “경제정책과, 도시계획과”로 한다.

⑤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도시관리국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

⑥ 인천광역시 서구 개발부담금 체납정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도시관리국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

⑦ 인천광역시 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2호 중 “미래기획실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21년 7월 12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886호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가목 중 “도시관리국”을 “도시주택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21년 7월 12일

인천광역시 서구 규칙 제1026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6제1항 중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도시계획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을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도시관리국)”을 “(도시주택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건축과장은”을 “도시계획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건축과장은”으로 한다.

제12조 중 “아라동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환경사무관”을 “아라동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지방환경사무관”으로 한다.

별표1 및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규칙 심의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6호 중 “도시관리국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

②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관리 심의회 설치 및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미래도시국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

구 본청 사무분장표 (제7조 관련)

부서명	분 장 사 무	
스마트에코 시티추진단	1.	스마트에코시티 사무 총괄
	2.	스마트에코시티 구상 및 기획
	3.	스마트에코시티 종합계획
	4.	스마트에코시티 위원회 운영
	5.	총괄건축가 업무 지원
	6.	건축 및 도시·디자인 관련 정책수립(총괄건축가)
	7.	건축 및 도시행정에 대한 전반적 자문
		(가) 건축물 기획·설계에 대한 조정 자문
		(나) 각종 개발사업(신도시·재개발·재건축·도시재생 등) 자문
		(다) 공공사업의 건축디자인 통합·조정 지원
		(라) 도시경관 향상 및 공원·녹지조성사업 자문
		(마) 지역 유희공간 등 발굴 및 개선에 대한 지원
		(바)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자문
8.	스마트시티 구축 사업	
	(가) 도시통합운영센터 구축 추진	
	(나) 스마트시티 챌린지사업	
	(다) 스마트시티 공모 및 시범사업	
	(라) 스마트시티 기반시설 구축	
	(마)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 구축 및 운영	
	(바) 스마트시티 관련 민원 처리	
9.	도시경관사업 계획수립	
10.	도로 및 가로시설물 경관사업	
11.	수시 경관사업 추진	
12.	경관시설물 점검 및 유지관리	
13.	전선 지중화 사업 추진	

구 본청 사무분장표(제7조 관련)

부서명	분장사무
환경관리과	1. 배출시설 설치(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수리
	2. 무허가배출업소 지도단속
	3. 토양오염 유발시설 신고
	4. 환경영향평가 초안검토 및 주민의견 수렴
	5. 각종 중규모사업의 환경성 검토
	6. 환경보전 종합계획의 수립
	7. 환경기술인 교육
	8. 환경보전 대구민 홍보
	9. 명예환경감시원 위촉 및 운영
	10.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및 체납관리
	11. 환경관리 민원처리
	12. 환경오염 배출업소 현황 조사
	13. 토양오염 실태조사
	14. 환경오염배출사업장 지도점검 추진계획 수립
	15. 대기·수질·소음진동 배출업소 지도점검 및 고발, 행정처분, 배출부과금 부과·징수
	16. 토양오염 유발시설 지도점검
	17. 하천오염행위 단속
	18. 환경 사회복무요원관리
	19. 환경관련 오염도검사자료 관리
	20. 환경관련 진정민원 처리
	21. 대기·수질 기본 배출부과금 부과 징수
	22. 환경재난방지계획 수립 시행
	23. 수질·대기·환경오염자동측정망(TMS)운영
	24. 배출·방지시설 개선계획서 수리
	25. 환경분야 특정관리대상시설 관리
	26. 수질오염사고 예방 및 조치(연안해양 포함)
	27.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사항
	28. 중수도, 빗물이용시설에 관한 사항
	29. 저수조청소업 신고에 관한 사항

	30.	환경관련 정책, 시책, 현안사항 업무
	31.	환경사범 수사 업무
	32.	환경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33.	악취배출시설설치신고 수리
	34.	악취저감시설 개선 보조금 지원
	35.	유해조수포획허가 및 수렵면허
	36.	야생동물 구호
	37.	생태계교란생물퇴치사업
	38.	환경책임보험 적용대상 사업장 관리
	39.	먹는샘물공동시설(약수터)관리 및 수질검사
	40.	절수시설 설치 및 지도·점검

구 본청 사무분장표(제7조 관련)

부서명	분장사무
기후에너지 정책과	1. 기후변화종합계획 및 증장기 계획 수립 추진
	2.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3. 탄소포인트제 가입 추진(전기, 수도)
	4. 녹색구매 및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업무
	5. 기후환경네트워크 관련 업무 추진
	6. 그린스타트운동 추진
	7. 그린리더 양성 및 운영관리
	8. 환경교육 총괄
	9.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사업
	10. 생물다양성관리사업
	11. 가스 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12. 가스 안전점검 사후관리
	13. 고압가스(제조, 판매, 저장소 설치, 용기·냉동기·특정 설비제조허가)에 관한 사무
	14. 고압가스업(운반자, 수입업자 등록)에 관한 사무
	15. 액화석유가스업(충전, 판매, 가스용품제조, 저장 허가)에 관한 사무
	16.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허가에 관한 사무
	17. 특정고압가스, 액화석유가스 사용 신고 및 가스사용시설 관리에 관한 사무
	18. 도시가스시설 공사계획 승인 및 신고
	19. 도시가스업(충전, 공급시설)에 관한 사무
	20. 가스시설 안전관리자 선해임 신고
	21. 가스안전관리 제도·홍보
	22. 석유판매업(주유소, 용제판매소, 일반판매소, 이동판매소)에 관한 사무
	23. 에너지 수급위기 극복에 관한 사무
	24. 에너지 이용합리화법 관련사무
	25.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 사업에 관한 사무
	26. 기타 가스안전에 대한 위해방지 조치·명령
	27. 전력효율향상사업에 관한 업무
	28. 석탄가공업에 관한 사무
	29. 난방연료 지원사업(에너지바우처)에 관한 업무
	30.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련 업무

구 본청 사무분장표(제7조 관련)

부서명	분장사무
도시계획과	1. 도시개발사업 예산 및 특별회계관리
	2. 도시개발사업 보상업무
	3. 도시개발사업 청산금 징·교부
	4. 도시개발사업 토지등기
	5. 도시개발사업 체비지관리 및 매각
	6.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수립 및 시행
	7.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개발계획수립 요청·실시계획인가 신청
	8. 도시개발사업 기반시설조성공사 시행
	9. 환지예정지 지정·인가 및 처분
	10. 환지예정지 관리 및 사용허가
	11. 미불용지 보상업무에 관한 사항
	12. 토지 등의 수용에 따른 확인서 발급에 관한 사항
	13. 잔여지 보상에 관한 사항
	14. 미협의 토지 및 지장물의 수용재결에 관한 사항
	15. 수용재결에 따른 입회공무원 지정에 관한 사항
	16. 도서·낙도 개발사업 추진
	17.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18. 도시계획에 관한 사무
	19. 국토이용계획에 관한 사무
	20.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사무
	21.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무
	22. 항만 관련 사무

구 본청 사무분장표(제7조 관련)

부서명	분장사무
주 택 과	1. 주택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수립
	2. 공동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가. 사업승인
	나. 착공신고
	다. 사용검사
	라. 경미한 변경처리 및 사업계획 변경
	마.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바. 공사장 안전점검
	사. 임시사용 승인
	아. 감정평가 등록 및 의뢰
	자. 감리등록 및 변경관계
	차. 위반건축물 고발 및 조치
카. 공동주택 감리자 지정	
1 페이지	3. 공동주택관리
	가.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변경)신고
	나. 공동주택 하자보수
	다. 공동주택 행위허가, 신고
	라. 위반건축물 고발 및 조치
	마. 노후·불량주택(재난위험시설물) 안전점검
	바. 시특법대상건축물 안전점검
	사.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아.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자. 주택관리업등록(변경)
카. 공동주택 감사·지도·감독	
4. 공동주택 관련 특수시책 업무	
2 페이지	5. 조합주택설립에 관한 사항
	가. 설립인가 나. 조합신고
3 페이지	6. 임대주택
	가. 사업자 등록(변경) 나. 임대조건 신고 다. 임대주택분양전환허가
4 페이지	7.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5 페이지	8. 주거복지 관련
6 페이지	9.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지급
7 페이지	10. 저소득가구 영구임대주택 입주대상자 추천
8 페이지	11. 저소득가구전세임대, 매입임대 입주대상자 추천
9 페이지	12. 공공주택 특별법에 관한 사무

구 본청 사무분장표(제7조 관련)

부서명	분장사무
도시재생과	1. 도시재생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관련 사무
	가. 도시재생 거버넌스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
	나. 도시재생사업활성화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다. 도시재생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2. 디자인거리 조성사업(가좌공업지역 디자인거리 조성)
	3.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관련 사무
	4.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한 사무(더불어마을 사업)
	가. 희망지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나. 더불어마을 사업 선전에 관한 사항
	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라. 정비구역 지정 신청에 관한 사항
	마. 더불어마을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5.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에 관한 사무
	7.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에 관한 사무
	8. 개발행위허가(공작물 설치, 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물건적치)에 관한 사무
	9. 위법 개발행위 단속 및 처분에 관한 사무
	10. 광고물등의 표시허가 신고수리
	11. 광고물 안전도 검사실시 및 위탁
12. 광고물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13. 불법유동광고물 과태료의 부과	
14. 옥외광고물업의 지도·관리	
15. 광고물 관리심의위원회 운영	
16. 광고물의 사후관리	
17. 불법고정광고물 이행강제금 부과	
18.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19. 현수막지정게시대·시민게시판 위탁관리	

[별표 4]	
동 사무분장표(제13조 관련)	
부 서 명	분 장 사 무
동	1. 인사, 복무, 보안, 문서 및 공인관리에 관한 사항
	2. 당직 및 비상근무
	3. 통·반 구역 확정, 통·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4. 주민자치센터 및 주민자치회 운영에 관한 사항
	5. 예산편성운영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자생단체 등 각종 단체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7. 주민등록, 가족관계등록, 인감에 관한 사항
	8. 민방위 운영에 관한 사항
	9. 제증명 신고 사실확인 및 증명의 경유에 관한 사항
	10. 동재산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11. 신·증축, 대수전을 제외한 동 주민센터 청사 시설물 정비 관리
	12. 각종 행사 참가, 간행물 배부에 관한 사항
	13. 법령 기타 공지사항의 공지 및 주민 여론조사 처리에 관한 사항
	14. 취학아동 사무
	15. 국민생활보장수급자 및 저소득 주민 보호에 관한 사항
	16. 재해대책에 관한 사항
	17. 어디서나 민원에 관한 사항
	18. 임대차계약 확정일자 부여에 관한 사무
	19. 토지(임야)대장등본 발급
	20.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가. 연간방문계획 수립 및 방문상담·차량 관리
	나.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다. 통합사례관리 운영 및 서비스 연계
	라. 통합적인 종합상담 수행
	마. 방문간호 및 건강서비스 제공
	바. 민관협력사업 발굴 및 운영
	사. 위기가구 등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21.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체결, 변경, 해제)에 대한 민원접수, 처리
	22. 그 밖에 구청장으로부터 위임된 사무 및 지시된 사항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21년 7월 12일

인천광역시 서구 규칙 제1027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 규칙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현원 해소 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별표 1]

인천광역시 서구 직급·직렬별 지방공무원 정원표(제2조 관련)

직급별	기관별	총 계	본 청	의 회	보건소	출장소	등	비고 (행정복지)
총 계		1,390	842	20	120	45	363	(9)
정 무 직 계		1	1					
	구 청 장	1	1					
일 반 직 계		1,385	837	20	120	45	363	(9)
2급 소계		1	1					
	이 사 관	1	1					
4급 소계		8	6	1	1			
	서 기 관	2	1	1				
	기 술 서 기 관	2	1		1			
	서 기관·기술서기관	4	4					
5급 소계		731	398	22	8	1	23	
	행 정	10	8	2				
	의 무	4			4			
	행 정 · 사 회 복 지	5	5					
	행 정 · 공 업	2	2					
	행 정 · 보 건	1	1					
	행 정 · 환 경	2	2					
	행 정 · 시 설	12	12					
	행 정 · 방 송 통 신	1	1					
	행 정 · 사 회 복 지 · 공 업	2					2	
	행 정 · 사 회 복 지 · 농 업	1					1	
	행 정 · 사 회 복 지 · 녹 지	4					4	
	행 정 · 사 회 복 지 · 보 건	4					4	
	행 정 · 사 회 복 지 · 환 경	2					2	
	행 정 · 사 회 복 지 · 시 설	4					4	
	행 정 · 사 회 복 지 · 방 송 통 신	1					1	
	행 정 · 공 업 · 농 업	2					2	

행정 · 공업 · 환경	1	1					
행정 · 공업 · 시설	1	1					
행정 · 농업 · 수의	1	1					
행정 · 녹지 · 시설	1	1					
행정 · 보건 · 환경	1	1					
행정 · 보건 · 시설	1					1	
행정 · 환경 · 시설	1	1					
보건 · 의료기술 · 간호	1			1			
행정 · 사회복지 · 녹지 · 시설	1					1	
행정 · 사회복지 · 보건 · 시설	1	1					
행정 · 사회복지 · 환경 · 시설	1					1	
행정 · 녹지 · 환경 · 시설	1	1					
행정 · 보건 · 의무 · 간호	1			1			
행정 · 공업 · 농업 · 시설	1				1		
행정 · 보건 · 의료기술 · 간호	2			2			
6급 소계	317	221	8	21	13	54	
행정	90	74	4	1	1	10	
세무	18	16			2		
전산	1	1					
사회복지	18	18					
속기	2		2				
공업	8	7			1		
농업	1	1					
녹지	6	5			1		
수의	1	1					
보건	5	5					
의료기술	1			1			
간호	1			1			
환경	6	6					
시설	26	24			2		

방 송 통 신	1	1					
운 전	6	3	1		1	1	
전 화 상 담 운 영	1	1					
사 무 운 영	4	2			1	1	
행 정 · 세 무	13	9			1	3	
행 정 · 사 회 복 지	39	9	1			29	
행 정 · 공 업	2	2					
행 정 · 농 업	1				1		
행 정 · 녹 지	2	1				1	
행 정 · 보 건	5	2			1	2	
행 정 · 간 호	1					1	
행 정 · 환 경	7	5				2	
행 정 · 시 설	13	13					
행 정 · 방 송 통 신	4	3				1	
사 회 복 지 · 간 호	1						
공 업 · 보 건	1	1					
공 업 · 환 경	1	1					
녹 지 · 시 설	1	1					
보 건 · 간 호	1			1			
보 건 · 환 경	1	1					
식 품 위 생 · 간 호	1			1			
의 료 기 술 · 간 호	2			2			
환 경 · 시 설	1	1					
시 설 · 방 재 안 전	1	1					
행 정 · 세 무 · 공 업	1					1	
행 정 · 세 무 · 농 업	1					1	
행 정 · 세 무 · 방 송 통 신	1					1	
행 정 · 공 업 · 환 경	2	2					
행 정 · 공 업 · 시 설	2	1			1		
행 정 · 보 건 · 간 호	2			2			

행정 · 보건 · 환경	1	1					
행정 · 환경 · 시설	1	1					
보건 · 의료기술 · 간호	9			9			
식품위생 · 의료기술 · 간호	1			1			
행정 · 녹지 · 환경 · 시설	1	1					
보건 · 의료기술 · 약무 · 간호	1			1			
7급 소계	399	251	4	34	14	96	(1)
행정	146	87	4		2	53	(1)
세무	20	18			2		
전산	6	6					
사회복지	61	31				30	
공업	9	8			1		
농업	2	1			1		
녹지	8	7			1		
수의	3	3					
해양수산	1	1					
보건	17	11		5	1		
의료기술	4			4			
간호	17			17			
환경	12	12					
시설	54	49			5		
방재안전	1	1					
방송통신	3	3					
운전	11	1		1		9	
기계운영	1	1					
사무운영	2					2	
행정 · 세무	3	2			1		
행정 · 사회복지	4	2				2	
행정 · 환경	1	1					
행정 · 시설	4	4					

농업·수역	1	1					
보건·간호	2			2			
보건·환경	1	1					
식품위생·의료기술	2			2			
보건·의료기술·간호	3			3			
8급 소계	383	207	4	47	12	113	(5)
행정	139	73	3	2		61	(5)
세무	9	8			1		
전산	2	2					
사회복지	68	24		2		42	
공업	14	14					
농업	1	1					
녹지	7	6			1		
보건	8	4		1	3		
의료기술	1			1			
간호	31			31			
환경	17	17					
시설	40	35			5		
방재안전	1	1					
방송통신	3	3					
운전	11		1	1		9	
전화상담운영	1	1					
기계운영	1	1					
사무운영	1	1					
행정·전산	1	1					
행정·사회복지	7	6				1	
행정·공업	1	1					
행정·농업	1				1		
행정·간호	1			1			
행정·시설	5	5					

공 업 · 보 건	1	1					
공 업 · 환 경	1				1		
보 건 · 의 료 기 술	1			1			
보 건 · 간 호	1			1			
보 건 · 환 경	2	2					
식 품 위 생 · 의 료 기 술	1			1			
보 건 · 식 품 위 생 · 의 료 기 술	3			3			
보 건 · 의 료 기 술 · 간 호	2			2			
9급 소계	204	112	1	9	5	77	(3)
행 정	84	38	1	2	2	41	(3)
세 무	14	13			1		
사 회 복 지	41	6		1		34	
공 업	6	6					
농 업	1	1					
녹 지	5	3			2		
보 건	3	1		2			
의 료 기 술	2			2			
환 경	9	9					
시 설	20	20					
방 재 안 전	1	1					
방 송 통 신	3	3					
운 전	3			1		2	
행 정 · 세 무	3	3					
행 정 · 사 회 복 지	4	4					
행 정 · 보 건	1	1					
행 정 · 환 경	2	2					
행 정 · 시 설	2	1		1			
연 구 직 계	1	1					
기 록 연 구 사	1	1					
별 정 직 계	3	3					

7급 상당 소계	1	1					
비 서	1	1					
8급 상당소계	2	2					
비 서	2	2					
9급 상당 소계							
비 서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개정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21년 7월 12일

인천광역시 서구 훈령 제366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개정 규정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6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 (제2조 관련)

구 분	직 종	직급	정원	직 급 별 내 역
합		계	1,390	
	정무직	소계	1	
	일반직	소계	1,385	
		2급	1	행정 1
		4급	8	행정 2, 기술 2, 행정·기술 4
		5급	73	행정 10, 의무 4, 행정·사회복지 5, 행정·공업 2, 행정·보건 1, 행정·환경 2, 행정·시설 12, 행정·방송통신 1, 행정·사회복지·공업 2, 행정·사회복지·농업 1, 행정·사회복지·녹지 4, 행정·사회복지·보건 4, 행정·사회복지·환경 2, 행정·사회복지·시설 4, 행정·사회복지·방송통신 1, 행정·공업·농업 2, 행정·공업·환경 1, 행정·공업·시설 1, 행정·농업·수의 1, 행정·녹지·시설 1, 행정·보건·환경 1, 행정·보건·시설 1, 행정·환경·시설 1, 보건·의료기술·간호 1, 행정·사회복지·보건·시설 1, 행정·사회복지·환경·시설 1, 행정·사회복지·녹지·시설 1, 행정·녹지·환경·시설 1, 행정·보건·의무·간호 1, 행정·공업·농업·시설 1, 행정·보건·의료기술·간호 2
		6급	317	행정 90, 세무 18, 전산 1, 사회복지 18, 속기 2, 공업 8, 농업 1, 녹지 6, 수의 1, 보건 5, 의료기술 1, 간호 1, 환경 6, 시설 26, 방송통신 1, 운전 6, 전화상담운영 1, 사무운영 4, 행정·세무 13, 행정·사회복지 39, 행정·공업 2, 행정·농업 1, 행정·녹지 2, 행정·보건 5, 행정·간호 1, 행정·환경 7, 행정·시설 13, 행정·방송통신 4, 사회복지·간호 1, 공업·보건 1, 공업·환경 1, 녹지·시설 1, 보건·간호 1, 보건·환경 1, 식품위생·간호 1, 의료기술·간호 2, 환경·시설 1, 시설·방재안전 1, 행정·세무·공업 1, 행정·세무·농업 1, 행정·세무·방송통신 1, 행정·공업·환경 2, 행정·공업·시설 2, 행정·보건·간호 2, 행정·보건·환경 1, 행정·환경·시설 1, 보건·의료기술·간호 9, 식품위생·의료기술·간호 1, 행정·녹지·환경·시설 1, 보건·의료기술·약무·간호 1
7급	399	행정 146, 세무 20, 전산 6, 사회복지 61, 공업 9, 농업 2, 녹지 8, 수의 3, 해양수산 1, 보건 17, 의료기술 4, 간호 17, 환경 12, 시설 54, 방재안전 1, 방송통신 3, 운전 11, 기계운영 1, 사무운영 2, 행정·세무 3, 행정·사회복지 4, 행정·환경 1, 행정·시설 4, 농업·수의 1, 보건·간호 2, 보건·환경 1, 식품위생·의료기술 2, 보건·의료기술·간호 3		

구 분	직 중	직급	정원	직급 별 내역
		8급	383	행정 139, 세무 9, 전산 2, 사회복지 68, 공업 14, 농업 1, 녹지 7, 보건 8, 의료기술 1, 간호 31, 환경 17, 시설 40, 방재안전 1, 방송통신 3, 운전 11, 전화상담운영 1, 기계운영 1, 사무운영 1, 행정·전산 1, 행정·사회복지 7, 행정·공업 1, 행정·농업 1, 행정·간호 1, 행정·시설 5, 공업·보건 1, 공업·환경 1, 보건·의료기술 1, 보건·간호 1, 보건·환경 2, 식품위생·의료기술 1, 보건·식품위생·의료기술 3, 보건·의료기술·간호 2
		9급	204	행정 84, 세무 14, 사회복지 41, 공업 6, 농업 1, 녹지 5, 보건 3, 의료기술 2, 환경 9, 시설 20, 방재안전 1, 방송통신 3, 운전 3, 행정·세무 3, 행정·사회복지 4, 행정·보건 1, 행정·환경 2, 행정·시설 2
	별정직	계	3	
		7급	1	일반비서 1
		8급	2	일반비서 2
		9급	0	
	연구직	계	1	
		연구사	1	기록연구사 1

구 분	직 종	직급	정원	직 급 별 내 역
구 분 청	계		842	
	정무직	소계	1	
	일반직	소계	837	
		2급	1	행정 1
		4급	6	행정 1, 기술 1, 행정·기술 4
		5급	39	행정 8, 행정·사회복지 5, 행정·공업 2, 행정·보건 1, 행정·환경 2, 행정·시설 12, 행정·방송통신 1, 행정·공업·환경 1, 행정·공업·시설 1, 행정·농업·수의 1, 행정·녹지·시설 1, 행정·보건·환경 1, 행정·환경·시설 1, 행정·사회복지·보건·시설 1, 행정·녹지·환경·시설 1
		6급	221	행정 74, 세무 16, 전산 1, 사회복지 18, 공업 7, 농업 1, 녹지 5, 수의 1, 보건 5, 환경 6, 시설 24, 방송통신 1, 운전 3, 전화상담운영 1, 사무운영 2, 행정·세무 9, 행정·사회복지 9, 행정·공업 2, 행정·녹지 1, 행정·보건 2, 행정·환경 5, 행정·시설 13, 행정·방송통신 3, 공업·보건 1, 공업·환경 1, 녹지·시설 1, 보건·환경 1, 환경·시설 1, 시설·방재안전 1, 행정·공업·환경 2, 행정·공업·시설 1, 행정·보건·환경 1, 행정·환경·시설 1, 행정·녹지·환경·시설 1
		7급	251	행정 87, 세무 18, 전산 6, 사회복지 31, 공업 8, 농업 1, 녹지 7, 수의 3, 해양수산 1, 보건 11, 환경 12, 시설 49, 방재안전 1, 방송통신 3, 운전 1, 기계운영 1, 행정·세무 2, 행정·사회복지 2, 행정·환경 1, 행정·시설 4, 농업·수의 1, 보건·환경 1
		8급	207	행정 73, 세무 8, 전산 2, 사회복지 24, 공업 14, 농업 1, 녹지 6, 보건 4, 환경 17, 시설 35, 방재안전 1, 방송통신 3, 전화상담운영 1, 기계운영 1, 사무운영 1, 행정·전산 1, 행정·사회복지 6, 행정·공업 1, 행정·시설 5, 공업·보건 1, 보건·환경 2
		9급	112	행정 38, 세무 13, 사회복지 6, 공업 6, 농업 1, 녹지 3, 보건 1, 환경 9, 시설 20, 방재안전 1, 방송통신 3, 행정·세무 3, 행정·사회복지 4, 행정·보건 1, 행정·환경 2, 행정·시설 1
	별정직	소계	3	
		7급	1	일반비서 1
		8급	2	일반비서 2
9급		0		
연구직	소계	1		
	연구사	1	기록연구사 1	
의회사무국	일반직	소계	20	

구 분	직 종	직급	정원	직 급 별 내 역
		4급	1	행정 1
		5급	2	행정 2
		6급	8	행정 4, 속기 2, 운전 1, 행정·사회복지 1
		7급	4	행정 4
		8급	4	행정 3, 운전 1
		9급	1	행정 1
보 건 소	일반직	소계	120	
		4급	1	기술 1
		5급	8	의무 4, 행정·보건·의무·간호 1, 보건·의료기술·간호 1, 행정·보건·의료기술·간호 2
		6급	21	행정 1, 의료기술 1, 간호 1, 사회복지·간호 1, 보건·간호 1, 식품위생·간호 1, 의료기술·간호 2, 행정·보건·간호 2, 보건·의료기술·간호 9, 식품위생·의료기술·간호 1, 보건·의료기술·약무·간호 1
		7급	34	보건 5, 의료기술 4, 간호 17, 운전 1, 보건·간호 2, 식품위생·의료기술 2, 보건·의료기술·간호 3
		8급	47	행정 2, 사회복지 2, 보건 1, 의료기술 1, 간호 31, 운전 1, 행정·간호 1, 보건·의료기술 1, 보건·간호 1, 식품위생·의료기술 1, 보건·식품위생·의료기술 3, 보건·의료기술·간호 2
		9급	9	행정 2, 사회복지 1, 보건 2, 의료기술 2, 운전 1, 행정·시설 1
출 장 소	일반직	계	45	
		5급	1	행정·공업·농업·시설 1
		6급	13	행정 1, 세무 2, 공업 1, 녹지 1, 시설 2, 운전 1, 사무운영 1, 행정·세무 1, 행정·농업 1, 행정·보건 1, 행정·공업·시설 1
		7급	14	행정 2, 세무 2, 공업 1, 농업 1, 녹지 1, 보건 1, 시설 5, 행정·세무 1
		8급	12	세무 1, 녹지 1, 보건 3, 시설 5, 행정·농업 1, 공업·환경 1
		9급	5	행정 2, 세무 1, 녹지 2
동	일반직	계	363	
		5급	23	행정·사회복지·공업 2, 행정·사회복지·농업 1, 행정·사회복지·녹지 4, 행정·사회복지·보건 4, 행정·사회복지·환경 2, 행정·사회복지·시설 4, 행정·사회복지·방송통신 1, 행정·공업·농업 2, 행정·보건·시설 1, 행정·사회복지·환경·시설 1, 행정·사회복지·녹지·시설 1
		6급	54	행정 10, 운전 1, 사무운영 1, 행정·세무 3, 행정·사회복지 29, 행정·녹지 1, 행정·보건 2, 행정·간호 1, 행정·환경 2, 행정·방송통신 1, 행정·세무·공업 1, 행정·세무·농업 1, 행정·세무·방송통신 1

구 분	직 종	직 급	정 원	직 급 별 내 역
		7급	96	행정 53(행정복지 1), 사회복지 30, 운전 9, 사무운영 2 행정·사회복지 2
		8급	113	행정 61(행정복지 5), 사회복지 42, 운전 9, 행정·사회복지 1,
		9급	77	행정 41(행정복지 3), 사회복지 34, 운전 2

[별표 2]

구 본청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 (제2조 관련)

구 분	직 종	직 급	정 원	직 급 별 내 역
합 계			842	
감사담당관	일반직	소계	11	
		5급	1	행정(개방형) 1
		6급	4	행정 3, 사회복지 1
		7급	6	행정 4, 시설 2
소통협력 담당관	일반직	소계	11	
		5급	1	행정·시설 1(개방형)
		6급	3	행정 3
		7급	5	행정 1, 전산 2, 사회복지 1, 시설 1
		8급	1	행정·전산 1
		9급	1	행정 1
기획예산 담당관	일반직	소계	28	
		4급	1	행정·기술 1
		5급	1	행정·방송통신 1
		6급	9	행정 6, 세무 1, 방송통신 1, 전화상담운영 1
		7급	11	행정 11
		8급	3	행정 1, 방송통신 1, 전화상담운영 1
		9급	3	행정 1, 방송통신 2
미래기획단	일반직	소계	12	
		5급	1	행정·시설 1(개방형)
		6급	3	시설 2, 행정·시설 1
		7급	3	행정 1, 환경 1, 시설 1
		8급	3	시설 2, 행정·시설 1

구 분	직 종	직급	정원	직 급 별 내 역	
		9급	2	시설 2	
스마트에코 시티추진단	일반직	소계	10		
		5급	1	행정·녹지·환경·시설 1	
		6급	3	행정 1, 행정·방송통신 1, 환경·시설 1	
		7급	3	시설 2, 방송통신 1	
		9급	3	행정 1, 시설 1, 방송통신 1	
홍보정책 담당관	일반직	소계	14		
		5급	1	행정 1	
		6급	2	행정 1, 전산 1	
		7급	6	행정 2, 전산 4	
		8급	4	행정 2, 전산 2	
		9급	1	행정 1	
총무과		계	29		
	정무직	소계	1		
	일반직	소계	25		
		2급	1	행정 1	
		4급	1	행정 1	
		5급	2	행정·시설 1, 행정·사회복지·보건·시설 1	
		6급	8	행정 7, 운전 1	
		7급	5	행정 4, 행정·시설 1	
		8급	7	행정 7	
		9급	1	행정 1	
		별정직	소계	3	
			7급	1	일반비서 1
	8급		2	일반비서 2	

구 분	직 종	직 급	정 원	직 급 별 내 역
공 동 체 협 치 과	일반직	소계	16	
		5급	1	행정 1
		6급	4	행정 4
		7급	4	행정 4
		8급	6	행정 6
		9급	1	행정 1
재 무 과	일반직	소계	22	
		5급	1	행정·시설 1
		6급	5	행정 3, 운전 1, 시설 1
		7급	9	행정 5, 시설 2, 운전 1, 행정·시설 1
		8급	6	행정 4, 공업 2
		9급	1	행정 1
세 무 1 과	일반직	소계	29	
		5급	1	행정 1
		6급	10	세무 6, 행정·세무 4
		7급	10	세무 9, 행정·세무 1
		8급	4	행정 1, 세무 3
		9급	4	세무 2, 행정·세무 2
세 무 2 과	일반직	소계	37	
		5급	1	행정 1
		6급	11	세무 8, 행정·세무 3
		7급	9	세무 8, 행정·세무 1
		8급	4	세무 4
		9급	12	세무 11, 행정·세무 1
민원봉사과		계	23	

구 분	직 종	직급	정원	직 급 별 내 역
	일반직	소계	22	
		5급	1	행정 1
		6급	5	행정 5
		7급	3	행정 3
		8급	8	행정 7, 사무운영 1
		9급	5	행정 5
	연구직	소계	1	
		연구사	1	기록연구사 1
복지정책과	일반직	소계	39	
		4급	1	행정·기술 1
		5급	1	행정·사회복지 1
		6급	7	사회복지 4, 행정·사회복지 3
		7급	13	행정 3, 사회복지 9, 행정·사회복지 1
		8급	12	행정 1, 사회복지 9, 행정·사회복지 2
		9급	5	행정 3, 사회복지 2
노인복지과	일반직	소계	15	
		5급	1	행정·사회복지 1
		6급	5	행정 1, 사회복지 2, 행정·사회복지 2
		7급	5	행정 1, 사회복지 3, 행정·사회복지 1
		8급	3	사회복지 3
		9급	1	행정 1
장애인 복지과	일반직	소계	20	
		5급	1	행정·사회복지 1
		6급	6	사회복지 4, 행정·사회복지 2
		7급	5	사회복지 5

구 분	직 종	직 급	정 원	직 급 별 내 역
		8급	3	사회복지 3
		9급	5	사회복지 2, 행정·사회복지 3
교육혁신과	일반직	소계	21	
		5급	1	행정 1
		6급	5	행정 5
		7급	8	행정 6, 사회복지 2
		8급	3	행정 3
		9급	4	행정 4
가정보육과	일반직	소계	30	
		5급	1	행정·사회복지 1
		6급	7	행정 2, 사회복지 5
		7급	9	행정 3, 사회복지 6
		8급	10	행정 3, 사회복지 5, 시설 1, 행정·사회복지 1
		9급	3	행정 2, 사회복지 1
아동행복과	일반직	소계	24	
		5급	1	행정·사회복지 1
		6급	4	행정 1, 사회복지 2, 행정·사회복지 1
		7급	7	행정 2, 사회복지 4, 보건 1
		8급	9	행정 2, 사회복지 4, 행정·사회복지 3
		9급	3	행정 2, 행정·사회복지 1
문화관광 체육과	일반직	소계	20	
		5급	1	행정 1
		6급	7	행정 6, 행정·시설 1
		7급	5	행정 4, 행정·시설 1
		8급	7	행정 6, 시설 1

구 분	직 종	직급	정원	직 급 별 내 역
클린도시과	일반직	소계	24	
		4급	1	행정·기술 1
		5급	1	행정·환경 1
		6급	5	환경 3, 행정·환경 1, 공업·환경 1
		7급	4	행정 1, 환경 3
		8급	8	공업 2, 환경 6
		9급	5	공업 1, 환경 4
환경관리과	일반직	소계	19	
		5급	1	행정·환경 1
		6급	3	환경 2, 행정·환경 1
		7급	3	환경 3
		8급	8	행정 1, 환경 7
		9급	4	환경 3, 행정·환경 1
기후에너지 정책과	일반직	소계	11	
		5급	1	행정·공업·환경 1 (개방형)
		6급	3	공업 1, 행정·공업·환경 2
		7급	4	공업 3, 환경 1
		8급	2	공업 1, 행정·공업 1
		9급	1	행정·환경 1
생태하천과	일반직	소계	22	
		5급	1	행정·환경·시설 1
		6급	7	행정 1, 공업 2, 시설 1, 운전 1, 보건·환경 1, 행정·녹지·환경·시설 1
		7급	7	행정 1, 환경 2, 시설 4
		8급	4	녹지 1, 보건 1, 시설 2
		9급	3	행정 1, 공업 1, 시설 1

구 분	직 종	직급	정원	직 급 별 내 역
안 전 총 괄 과	일반직	소계	24	
		5급	1	행정·시설 1
		6급	8	행정 2, 시설 1, 행정·시설 2, 행정·방송통신 1, 시설·방재안전 1, 행정·환경·시설 1
		7급	7	행정 2, 환경 1, 시설 1, 방재안전 1, 방송통신 2
		8급	5	공업 1, 시설 1, 방재안전 1, 방송통신 2
		9급	3	행정 1, 시설 1, 방재안전 1
자 원 순 환 과	일반직	소계	36	
		5급	1	행정·보건·환경 1
		6급	10	행정 3, 환경 1, 행정·환경 3, 행정·시설 1, 공업·보건 1, 행정·보건·환경 1
		7급	10	행정 6, 보건 1, 환경 1, 행정·환경 1, 보건·환경 1
		8급	9	행정 3, 환경 4, 보건·환경 2
		9급	6	행정 4, 환경 2
공 원 녹 지 과	일반직	소계	23	
		5급	1	행정·녹지·시설 1
		6급	7	녹지 5, 행정·녹지 1, 행정·방송통신 1
		7급	7	녹지 7
		8급	5	녹지 5
		9급	3	녹지 3
경 제 정 책 과	일반직	소계	25	
		4급	1	행정·기술 1
		5급	1	행정·농업·수의 1
		6급	6	행정 4, 농업 1, 수의 1
		7급	11	행정 5, 농업 1, 수의 3, 해양수산 1, 농업·수의 1
		8급	5	행정 2, 농업 1, 시설 2
		9급	1	농업 1

구 분	직 종	직 급	정 원	직 급 별 내 역
기 업 지 원 일 자 리 과	일반직	소계	21	
		5급	1	행정·공업 1
		6급	7	행정 3, 공업 2, 행정·공업 1, 행정·공업·시설 1
		7급	6	행정 3, 공업 1, 시설 1, 기계운영 1
		8급	3	행정 1, 공업 2
		9급	4	행정 2, 공업 2
식 품 산 업 위 생 과	일반직	소계	23	
		5급	1	행정·보건 1
		6급	7	보건 5, 행정·보건 2
		7급	9	보건 9
		8급	4	보건 3, 공업·보건 1
		9급	2	보건 1, 행정·보건 1
교 통 정 책 과	일반직	소계	17	
		5급	1	행정·공업·시설 1
		6급	5	행정 3, 시설 1, 행정·공업 1
		7급	4	행정 3, 공업 1
		8급	5	행정 3, 공업 1, 시설 1
		9급	2	행정 2
주 차 관 리 과	일반직	소계	15	
		5급	1	행정·시설 1
		6급	6	행정 3, 세무 1, 시설 1, 사무운영 1
		7급	2	행정 1, 시설 1
		8급	5	행정 4, 공업 1
		9급	1	행정 1
차 량 민 원 과	일반직	소계	23	

구 분	직 종	직급	정원	직 급 별 내 역
		5급	1	행정·공업 1
		6급	4	행정 2, 행정·세무 2
		7급	6	행정 4, 세무 1, 공업 1
		8급	9	행정 8, 세무 1
		9급	3	행정 2, 공업 1
도 로 과	일반직	소계	29	
		4급	1	기술 1
		5급	1	행정·시설 1
		6급	8	행정 2, 공업 2, 시설 3, 행정·시설 1
		7급	7	행정 2, 공업 2, 시설 3
		8급	11	공업 1, 시설 7, 기계운영 1, 행정·시설 2
		9급	1	공업 1
도시계획과	일반직	소계	24	
		5급	1	행정·시설 1
		6급	6	행정 1, 시설 2, 행정·시설 2, 녹지·시설 1
		7급	10	행정 3, 시설 7
		8급	5	행정 2, 시설 3
		9급	2	시설 2
건축과	일반직	소계	27	
		5급	1	행정·시설 1
		6급	4	행정 1, 시설 3
		7급	4	시설 4
		8급	10	행정 1, 공업 3, 시설 6
		9급	8	시설 7, 행정·시설 1
주택과	일반직	소계	17	

구 분	직 종	직급	정원	직 급 별 내 역
		5급	1	행정·시설 1
		6급	4	시설 2, 행정·사회복지 1, 행정·시설 1
		7급	5	사회복지 1, 시설 4
		8급	5	시설 4, 행정·시설 1
		9급	2	사회복지 1, 시설 1
도시재생과	일반직	소계	25	
		5급	1	행정·시설 1
		6급	7	행정 1, 시설 2, 사무운영 1, 행정·시설 3
		7급	7	행정 1, 시설 6
		8급	5	행정 2, 시설 3
		9급	5	행정 1, 시설 4
토지정보과	일반직	소계	26	
		5급	1	행정·시설 1
		6급	6	시설 5, 행정·시설 2
		7급	12	행정 1, 시설 10, 행정·시설 1
		8급	6	행정 3, 시설 2, 행정·시설 1
		9급	1	시설 1

[별표 6]

동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 (제2조 관련)

구 분	직 종	직 급	정원	직 급 별 내 역
합 계			363	
검 암 경 서 동	일반직	소계	22	
		5급	1	행정 · 공업 · 농업 1
		6급	3	행정 1, 행정 · 사회복지 2
		7급	6	행정 3, 사회복지 3
		8급	8	행정 5, 사회복지 2, 운전 1
		9급	4	행정 2(행정복지 1), 사회복지 2
연 회 동	일반직	소계	22	
		5급	1	행정 · 사회복지 · 보건 1
		6급	3	행정 · 세무 1, 행정 · 사회복지 2
		7급	7	행정 3, 사회복지 3, 운전 1
		8급	4	행정 3, 사회복지 1
		9급	7	행정 3, 사회복지 4
청 라 1 동	일반직	소계	17	
		5급	1	행정 · 사회복지 · 보건 1
		6급	2	행정 · 세무 1, 행정 · 사회복지 1
		7급	7	행정 4(행정복지 1), 사회복지 2, 운전 1
		8급	5	행정 4, 사회복지 1
		9급	2	행정 1, 사회복지 1
청 라 2 동	일반직	소계	16	
		5급	1	행정 · 사회복지 · 녹지 · 시설 1
		6급	2	행정 · 사회복지 1, 행정 · 환경 1
		7급	2	행정 2
		8급	7	행정 5, 사회복지 1, 운전 1
		9급	4	행정 2, 사회복지 2
청 라 3 동	일반직	소계	13	
		5급	1	행정 · 사회복지 · 녹지 1

구 분	직 종	직 급	정 원	직 급 별 내 역
		6급	2	행정 1, 행정·사회복지 1
		7급	3	행정 2, 사무운영 1
		8급	4	행정 3(행정복지 1), 사회복지 1
		9급	3	행정 2, 사회복지 1
가 정 1 동	일반직	소계	19	
		5급	1	행정·사회복지·시설 1
		6급	3	행정·사회복지 2, 행정·보건 1
		7급	5	행정 3, 사회복지 2
		8급	5	행정 2, 사회복지 2, 운전 1
		9급	5	행정 2(행정복지 1), 사회복지 3
가 정 2 동	일반직	소계	10	
		5급	1	행정·사회복지·시설 1
		6급	2	행정·사회복지 1, 행정·세무·방송통신 1
		7급	1	행정 1
		8급	4	행정 1(행정복지 1), 사회복지 1, 운전 1, 행정·사회복지 1
		9급	2	행정 1, 사회복지 1
가 정 3 동	일반직	소계	10	
		5급	1	행정·사회복지·녹지 1
		6급	2	행정 1, 행정·사회복지 1
		7급	1	행정 1
		8급	3	행정 2(행정복지 1), 사회복지 1
		9급	3	행정 1, 사회복지 1, 운전 1
신 현 원 창 동	일반직	소계	20	
		5급	1	행정·사회복지·공업 1
		6급	3	행정 1, 행정·사회복지 2
		7급	6	행정 3, 사회복지 3
		8급	5	행정 2, 사회복지 2, 운전 1
		9급	5	행정 2, 사회복지 3
석 남 1 동	일반직	소계	20	

구 분	직 종	직급	정원	직 급 별 내 역
		5급	1	행정·사회복지·환경 1
		6급	3	행정 1, 행정·사회복지 2
		7급	6	행정 2, 사회복지 2, 운전 1, 행정·사회복지 1
		8급	5	행정 3, 사회복지 2
		9급	5	행정 2, 사회복지 3
석 남 2 동	일반직	소계	15	
		5급	1	행정·사회복지·보건 1
		6급	2	행정·환경 1, 행정·사회복지 1
		7급	3	행정 2, 사회복지 1
		8급	8	행정 3, 사회복지 4, 운전 1
		9급	1	행정 1
석 남 3 동	일반직	소계	12	
		5급	1	행정·사회복지·시설 1
		6급	2	행정·녹지 1, 행정·사회복지 1
		7급	4	행정 2, 사회복지 1, 운전 1
		8급	4	행정 2, 사회복지 2
		9급	1	행정 1(행정복지)
가 좌 1 동	일반직	소계	16	
		5급	1	행정·사회복지·녹지 1
		6급	2	행정·세무·공업 1, 행정·사회복지 1
		7급	2	행정 1, 사회복지 1
		8급	8	행정 4, 사회복지 3, 운전 1
		9급	3	행정 2, 사회복지 1
가 좌 2 동	일반직	소계	15	
		5급	1	행정·사회복지·방송통신 1
		6급	3	행정 1, 행정·사회복지 1, 사무운영 1
		7급	4	행정 3, 사회복지 1
		8급	4	행정 2(행정복지 1), 사회복지 2
		9급	3	행정 2, 사회복지 1

구 분	직 종	직급	정원	직 급 별 내 역
가 좌 3 동	일반직	소계	13	
		5급	1	행정·사회복지·공업 1
		6급	2	행정 1, 행정·사회복지 1
		7급	3	행정 2, 운전 1
		8급	4	행정 2, 사회복지 2
		9급	3	행정 2, 사회복지 1
가 좌 4 동	일반직	소계	12	
		5급	1	행정·사회복지·환경 1
		6급	2	행정 1, 행정·사회복지 1
		7급	4	행정 3, 운전 1
		8급	2	행정 1, 사회복지 1
		9급	3	행정 1, 사회복지 2
검 단 동	일반직	소계	21	
		5급	1	행정·사회복지·농업 1
		6급	3	행정·사회복지 2, 행정·세무·농업 1
		7급	9	행정 3, 사회복지 3, 운전 1, 사무운영 1, 행정·사회복지 1
		8급	3	행정 2, 사회복지 1
		9급	5	행정 2, 사회복지 3
불로대곡동	일반직	소계	16	
		5급	1	행정·사회복지·시설 1
		6급	3	행정 1, 운전 1, 행정·사회복지 1
		7급	5	행정 3, 사회복지 2
		8급	4	행정 2(행정복지 1), 사회복지 2
		9급	3	행정 2, 사회복지 1
원 당 동	일반직	소계	16	
		5급	1	행정·보건·시설 1
		6급	2	행정·사회복지 1, 행정·방송통신 1
		7급	4	행정 2, 사회복지 1, 운전 1
		8급	5	행정 3, 사회복지 2

구 분	직 종	직급	정원	직 급 별 내 역
		9급	4	행정 2, 사회복지 2
당 하 동	일반직	소계	16	
		5급	1	행정·사회복지·보건 1
		6급	2	행정·세무 1, 행정·사회복지 1
		7급	4	행정 2, 사회복지 2
		8급	7	행정 4, 사회복지 2, 운전 1
		9급	2	행정 1, 사회복지 1
오 류 왕 길 동	일반직	소계	17	
		5급	1	행정·공업·농업 1
		6급	2	행정·보건 1, 행정·사회복지 1
		7급	5	행정 2, 사회복지 2, 운전 1
		8급	6	행정 3, 사회복지 3
		9급	3	행정 3
마 전 동	일반직	소계	15	
		5급	1	행정·사회복지·녹지 1
		6급	2	행정 1, 행정·사회복지 1
		7급	3	행정 2, 사회복지 1
		8급	5	행정 2, 사회복지 3
		9급	4	행정 3, 운전 1
아 라 동		소계	10	
		5급	1	행정·사회복지·환경·시설 1
		6급	2	행정·사회복지 1, 행정·간호 1
		7급	2	행정 2
		8급	3	행정 1, 사회복지 1, 운전 1
		9급	2	행정 1, 사회복지 1

인천광역시 서구 성희롱·성폭력 예방 지침 전부개정 지침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21년 7월 12일

인천광역시 서구 예규 제102호

인천광역시 서구 성희롱·성폭력 예방 지침 전부개정 지침

인천광역시 서구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방지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성희롱·성폭력을 예방하고, 2차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직원(구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과 고용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적용되며, 구의 통제범위에 있

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업무 관련성이 있는 제3자가 피해자인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를 포함한다.

② 이 지침의 피해자 보호는 피해자뿐 아니라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에게도 적용된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

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2차 피해”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2차 피해”를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성희롱·성폭력 방지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모든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의 실시
2.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의 설치·운영(2차 피해 포함)
3.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절차 및 매뉴얼 마련(2차 피해 포함)
4.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
5. 성희롱·성폭력 근절의지 및 행위자(2차 행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무관용의 원칙 천명

6. 소속 구성원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예방 홍보
7.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참석 및 관련 예산 확보
8.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실태 및 예방교육 만족도 조사 정례화 등 성평등한 조직문화의 정착을 위한 노력 등
9. 성희롱·성폭력 재발 방지 대책(2차 피해 재발 방지 대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수립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매년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방지조치 연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구성원이 아닌 외부전문가 등이 여성폭력 사건 조사 및 심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되면 지체 없이 조사 또는 고충심의 관련 위원회에서 해촉하여야 한다.

제5조(공직유관단체에 대한 관리·감독) ① 구청장은 구 소속 공직유관단체의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공직유관단체에 대한 감사 시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등 관련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성희롱·성폭력 행위자 및 2차 행위자가 공직유관단체의 기관장이거나 임원급에 있는 자인 경우에는 이 지침에도 불구하고 지체없이 상급기관으로 성희롱·성폭력 고충에 대한 조사를 이관하고, 이후의 조치도 상급기관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사를 이관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하고 사건발생기관에서는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6조(고충상담창구) ①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소속 직원의 성희롱·성폭력 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처리를 위하여 여성정책 업무 담당 부서에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이하 “고충상담창구”라 한다)를 두고, 조직 내외에 적극 알려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②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지정하되, 인사 또는 복무 담당자를 포함하여 2명 이상으로 하고, 남성 및 여성이 반드시 각 1명 이상 포함되도록 구성한다.

③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에 대한 상담·조언
2. 성희롱·성폭력 사건 및 2차 피해에 대한 고충의 접수·조사 및 처리
3.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조정에 관한 사항
4.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5.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고충처리절차 및 매뉴얼 마련에 관한 사항
6.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 기타 성희롱·성폭력 예방업무

④ 고충상담창구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고충(‘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사건) 접수 및 처리대장,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매뉴얼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사이버신고센터) 구청장은 성희롱·성폭력 피해 신고의 편의성을 위하여 기관 내에 사이버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8조(고충처리 업무의 지원) ① 구청장은 고충상담원의 성희롱·성폭력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 업무 역량강화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 교육수강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신규로 임명된 고충상담원은 성희롱·성폭력 상담 및 고충처리 관련 전문 교육을 임명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6조제3항의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선임(選任)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성희롱·성폭력 상담의 공신력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른 고충상담창구와 제7조에 따른 사이버신고센터의 업무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예방교육) ① 구청장은 매년 연초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내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교육 등의 방법으로 매년 각 1시간 이상 실시하되 최소 1회는 대면교육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관련 법령 및 지침
2.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발생 시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구제절차 및 보호조치
4. 성희롱·성폭력을 한 자 및 2차 피해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5. 민원인,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발생 시 대처 방안

6. 그 밖에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에 관한 사항 등

③ 신규임용된 사람에게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임용 전·후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경우 교육실적으로 인정한다.

④ 구청장은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효과 제고를 위하여 관리자 대상 별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 여성정책 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교육일시 및 방법, 교육참석자 명단, 교육내용, 교육사진, 강사프로필 등에 관한 실시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내용을 구성원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나 인터넷사이트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구성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제10조(고충상담 신청) ①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와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는 소속 직원은 서면, 전화, 온라인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 창구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고충상담원은 상담의 신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포함한 고충처리절차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피해자가 기관 내 고충처리절차를 충분히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고충상담원은 피해자가 요청한 보호조치 및 2차 피해방지조치의 이행을 점검하고 피해자 상담 후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11조(조사) ①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고충에 대한 조사를 원하는 피해자(피해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은 서면 또는 정보통신 등의 방법으로 별지 제2호서식의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고충사건 조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고충상담원은 지체 없이 조사 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

② 고충상담원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신속하게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2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조사과정 중에 2차 피해를 접수한 경우 성희롱·성폭력과 2차 피해 조사를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피해자가 접수한 2차 피해가 조사과정 중인 성희롱·성폭력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 2차 피해 조사를 별도로 실시할 수 있다.

⑤ 고충상담원은 제2항에 따른 조사과정에서 피해자등이 성적 수치심 등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조사과정에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거나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얻을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라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 법령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 중이거나, 피해자등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때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⑧ 성희롱·성폭력사건 조사 진행상황을 피해자 등에게 서면, 온라인, 전화 등 방법을 통해 알려주어야 한다.

제12조(피해자등 보호 및 비밀유지) ① 구청장은 피해자 등의 의사를 고려하여 행위자와의 신속한 업무·공간 분리, 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구청장(인사·복무 등에 관한 권한을 구청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람을 포함 한다)은 피해자등,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조사신청, 협력 등을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파면, 해임,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3.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6.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7. 그 밖에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사람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

③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피해자들의 치료 지원, 행위자에 대한 인사 조치 등을 통해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들의 근로권 등을 보호하여야 한다.

④ 고충상담원 등 성희롱·성폭력 고충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자는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사안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조사결과에의 보고 등) ① 고충상담원은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사안에 대한 조사를 완료한 즉시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성희롱·성폭력 사안의 공정한 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4조에 따른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4조(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성희롱·성폭력 사안의 처리, 재발 방지조치 등에 관하여 구청장이 부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여성정책 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④ 위원은 감사, 인사, 여성정책 업무 담당 부서의 장, 구 공무원노동조합이 추천하는 공무원 및 외부 성희롱·성폭력 방지 관련 전문가로서 남성 또는 여

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위원회의 개최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고충상담원으로 한다.

⑥ 위원회는 심의사유가 발생하면 구성하고, 해당 심의가 종결됨으로써 위원회 위원은 별도의 조치 없이 자동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15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 위원 중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신고인은 특정 위원을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해당 위원은 회피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 후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외부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조사의 종결) 구청장은 조사 및 위원회 심의 결과 성희롱·성폭력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서면 통보 후 조사를 종결한다.

제17조(징계) ① 구청장은 법령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성희롱·성폭력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행위자에 대한 무관용의 원

칙에 따라 징계 등의 제재 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행위자에 대한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③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근로권 등에 대한 추가 피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자를 엄중 징계한다.
- ④ 조사 중인 성희롱·성폭력 행위가 중징계에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구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성희롱·성폭력 사안의 처리 후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재발방지조치 등) ① 구청장은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한다.

- ② 구청장은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성희롱·성폭력의 실태 또는 인식에 대한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재발방지대책을 조사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여성가족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④ 구청장은 다음 각호와 같이 사건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여성가족부의 조직문화컨설팅 신청 등 조직문화 개선 대책을 수립·시행한다.
 1. 2차 피해의 정도가 심한 경우
 2. 2차 행위자가 여러 명인 경우
 3. 같은 기관에서 연간 여러 건의 사건이 발생한 경우

부 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고충(성희롱·성폭력 및 2차피해 사건) 접수 및 처리대장									
접수 번호	접수		신청인		고충내용	처리결과	회신 일자	확인	
	접수 일자	접수 방법	성명	소속 부서				고충 상담원	과장
						※ 상담종결 또는 고충사건으로 접수 및 처리결과 등 기록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21-126호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

인천 서구 가정동 루원시티 주상3블록 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 『주택법』 제 15조(사업계획의 승인)제4항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내용을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15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 7. 12.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사업명 : 인천 서구 가정동 루원시티 주상3블록 공동주택 신축
2. 사업주체 : (주)신영루원시티개발, (주)신영
3. 사업시행 및 면적규모
 - 가. 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루원시티 주상3블록
 - 나. 대지면적 : 23,045㎡
 - 다. 사업규모 : 연면적 149,911.4915㎡ (지하3층, 지상49층)
 - 라. 용도 : 공동주택(아파트) 5개동 및 부대·복리시설,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 마. 세대수 : 778세대
4. 사업기간 : 2019. 6. 1. ~ 2022. 11. 10.
5. 변경사항
 - 붙임 사업계획 변경승인내역 참조
6.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에 따른 의제처리사항
 - 건축법 제16조에 따른 건축허가사항 변경허가
 붙임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내역 1부.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세부내역

▣ 대지위치 : 인천 서구 가정동 루원시티 주상3블록

분야	연번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사유	비고
건축	01	- 101동~105동 제연헨 위치 : 21층 제연헨룸실	- 101동~105동 제연헨 위치 : 옥상	- 기능 및 안전성 확보	
	02	- 최고높이 : 151.6M - 101동~105동 20층 층고 : 3,100mm - 101동~105동 21층(대피층) 층고 : 3,300mm	- 최고높이 : 151.1M - 101동~105동 20층 층고 : 2,950mm - 101동~105동 21층(대피층) 층고 : 2,950mm	- 입면 품질 확보 - 기능 및 작업 안전성 확보	
	03	- 101동~105동 지상21층 (대피층) 단열계획도 : R-1, R-2 - 101동~105동 22층 단열계획도 : F-1	- 지상21층 (대피층) 단열계획도 : R01-1 - 22층 단열계획도 : F-9 - 형별성능관계내역 : R01-1, F9, F10, F12	- 층고 변경에 따른 단열 변경	
	04	- 101동~105동 21층 개구부 및 창호 높이 : H=1,270mm - 101동~105동 21층 조경구간 개구부 OPEN	- 21층 개구부 및 창호 높이 : 기준층 동일 높이 (H=1,070~2,470mm) - 21층 조경구간 개구부 창호 추가 설치	- 입면 품질 확보 - 미관향상 - 기능성 향상 - 유지관리기능 향상	
소방	01	- 101동~105동 제연헨 위치 : 21층 제연헨룸실	- 101동~105동 제연헨 위치 : 옥상	- 기능 및 안전성 확보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21-127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 7. 12.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부여·폐지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단봉로 191 외 81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부여(변경·폐지)사유	도 로 명 고 시 일	도 로 명 부 여 사 유
		별 도 열 략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서구청 토지정보과(☎560-4830)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1.7.12일자로 고시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2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조서

고시일 : 2021-7-12

연번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1736-6	인천광역시 서구 단봉로 191 (오류동)	20090922	봉수대로에서 나와 단봉초등학교 앞을 지나는 도로	
2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206-10	인천광역시 서구 신석로 20 (석남동)	20090922	도로구간 내의 신현동과 석남동의 머릿글자를 따 명명	
3	인천광역시 서구 백석동 212-71	인천광역시 서구 한서로 30 (백석동)	20171025	한울지구의 서쪽에 위치	
4	인천광역시 서구 백석동 212-71	인천광역시 서구 한서로 32 (백석동)	20171025	한울지구의 서쪽에 위치	
5	인천광역시 서구 백석동 212-27	인천광역시 서구 한서로 28 (백석동)	20171025	한울지구의 서쪽에 위치	
6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0	인천광역시 서구 이음5로 66 (원당동)	20200420	'서로를 이음'에서 착안, 신도시의 동서를 잇는 다섯번째 도로	
7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0	인천광역시 서구 이음5로 76 (원당동)	20200420	'서로를 이음'에서 착안, 신도시의 동서를 잇는 다섯번째 도로	
8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1047-2	인천광역시 서구 금산로 13 (경서동)	20200629	도로진행방향에 금산이 위치하고 있어 금산로라 명명함	
9	인천광역시 서구 원길동 128-254, 128-255,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480번길 69 (원길동)	20081231	원당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4,80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0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1715-1	인천광역시 서구 단봉로128번길 25-7 (오류동)	20090922	단봉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28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1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1716-2	인천광역시 서구 단봉로128번길 6 (오류동)	20090922	단봉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28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2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62-17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한내로174번길 15 (청라동)	20101111	도로의 기점이 접한 대로, 로의 기초번호로 도로명부여	
13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71-26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한내로162번길 13 (청라동)	20101111	도로의 기점이 접한 대로, 로의 기초번호로 도로명부여	
14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1045-3	인천광역시 서구 금산로7번길 9 (경서동)	20200629	금산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7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5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14-11	인천광역시 서구 비즈니스로194번길 17-9 (청라동)	20201012	도로의 기점이 접한 대로, 로의 기초번호로 도로명부여	
16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381-41	인천광역시 서구 북창로32번길 36 (원창동)	20131202	북창로 시작지점에서 약 32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조서

고시일 : 2021-7-12

연번	도로명주소	폐지사유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 1168 (백석동)	건물말소	20090710	도로 구간 인근에 봉수대가 있었음	산간건업
2	인천광역시 서구 중흥대로 374 (원창동)	건물말소	20090706	임진왜란 당시 의병장으로 금산 싸움에서 7백 의병과 함께 전사한 조원선생의 호를 따서 제명	
3	인천광역시 서구 드림로 625-1 (당하동)	건물말소	20150806	경인 아라뱃길(수로) 건설로 일부구간을 철거 및 폐쇄하고 신규 우회하는 도로 개설로 인한 도로구간 변경	
4	인천광역시 서구 드림로 625-94 (당하동)	건물말소	20150806	경인 아라뱃길(수로) 건설로 일부구간을 철거 및 폐쇄하고 신규 우회하는 도로 개설로 인한 도로구간 변경	
5	인천광역시 서구 드림로 625 (당하동)	건물말소	20150806	경인 아라뱃길(수로) 건설로 일부구간을 철거 및 폐쇄하고 신규 우회하는 도로 개설로 인한 도로구간 변경	
6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로 172-3 (마전동)	건물말소	20081231	미전이라는 법정동 명칭을 이용하여 명명	
7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709 (백석동)	건물말소	20090922	서쪽으로 길게 뻗은 해안이라는 뜻으로 해안을 매립할 때 서곶이라는 이름을 남기고자 명명	삼미포장
8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727 (백석동)	건물말소	20090922	서쪽으로 길게 뻗은 해안이라는 뜻으로 해안을 매립할 때 서곶이라는 이름을 남기고자 명명	백석빌딩
9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755 (백석동)	건물말소	20090922	서쪽으로 길게 뻗은 해안이라는 뜻으로 해안을 매립할 때 서곶이라는 이름을 남기고자 명명	
10	인천광역시 서구 한들로 94-3 (백석동)	건물말소	20090922	옛 자연부락의 명칭을 사용하여 한들로라 명명	청자원
11	인천광역시 서구 한들로 99 (백석동)	건물말소	20090922	옛 자연부락의 명칭을 사용하여 한들로라 명명	제활공센터
12	인천광역시 서구 한들로 95 (백석동)	건물말소	20090922	옛 자연부락의 명칭을 사용하여 한들로라 명명	창인가구아울렛
13	인천광역시 서구 한들로 91 (백석동)	건물말소	20090922	옛 자연부락의 명칭을 사용하여 한들로라 명명	월드장갑포장
14	인천광역시 서구 한들로 90 (백석동)	건물말소	20090922	옛 자연부락의 명칭을 사용하여 한들로라 명명	백석현대기아정비
15	인천광역시 서구 한들로 82 (백석동)	건물말소	20090922	옛 자연부락의 명칭을 사용하여 한들로라 명명	대성기업사
16	인천광역시 서구 한들로 80 (백석동)	건물말소	20090922	옛 자연부락의 명칭을 사용하여 한들로라 명명	중앙식재조경
17	인천광역시 서구 한들로 41 (백석동)	건물말소	20090922	옛 자연부락의 명칭을 사용하여 한들로라 명명	영국상사
18	인천광역시 서구 한들로 35 (백석동)	건물말소	20090922	옛 자연부락의 명칭을 사용하여 한들로라 명명	CLARK
19	인천광역시 서구 한들로 37 (백석동)	건물말소	20090922	옛 자연부락의 명칭을 사용하여 한들로라 명명	삼성물류기계
20	인천광역시 서구 한들로 1로 74-8 (백석동)	건물말소	20121025	한들이란 자연부락 명칭을 반영한 첫번째 도로	
21	인천광역시 서구 한들로 1로 82 (백석동)	건물말소	20121025	한들이란 자연부락 명칭을 반영한 첫번째 도로	
22	인천광역시 서구 한들로 1로 94-11 (백석동)	건물말소	20121025	한들이란 자연부락 명칭을 반영한 첫번째 도로	
23	인천광역시 서구 한들로 1로 94-9 (백석동)	건물말소	20121025	한들이란 자연부락 명칭을 반영한 첫번째 도로	
24	인천광역시 서구 한들로 1로 79 (백석동)	건물말소	20121025	한들이란 자연부락 명칭을 반영한 첫번째 도로	
25	인천광역시 서구 한들로 1로 69 (백석동)	건물말소	20121025	한들이란 자연부락 명칭을 반영한 첫번째 도로	한들네
26	인천광역시 서구 한들로 1로 73 (백석동)	건물말소	20121025	한들이란 자연부락 명칭을 반영한 첫번째 도로	
27	인천광역시 서구 한들로 1로 49 (백석동)	건물말소	20121025	한들이란 자연부락 명칭을 반영한 첫번째 도로	
28	인천광역시 서구 한들로 1로 51 (백석동)	건물말소	20121025	한들이란 자연부락 명칭을 반영한 첫번째 도로	
29	인천광역시 서구 한들로 1로 53 (백석동)	건물말소	20121025	한들이란 자연부락 명칭을 반영한 첫번째 도로	
30	인천광역시 서구 한들로 1로 41-1 (백석동)	건물말소	20121025	한들이란 자연부락 명칭을 반영한 첫번째 도로	
31	인천광역시 서구 한들로 1로 9 (백석동)	건물말소	20121025	한들이란 자연부락 명칭을 반영한 첫번째 도로	태림산업
32	인천광역시 서구 한들로 3로 51 (백석동)	건물말소	20121025	한들이란 자연부락 명칭을 반영한 세번째 도로	
33	인천광역시 서구 한들로 3로 49 (백석동)	건물말소	20121025	한들이란 자연부락 명칭을 반영한 세번째 도로	하이분석
34	인천광역시 서구 한들로 3로 41 (백석동)	건물말소	20121025	한들이란 자연부락 명칭을 반영한 세번째 도로	(주)기양
35	인천광역시 서구 한들로 3로 32 (백석동)	건물말소	20121025	한들이란 자연부락 명칭을 반영한 세번째 도로	안흥한약방
36	인천광역시 서구 한들로 3로 34-14 (백석동)	건물말소	20121025	한들이란 자연부락 명칭을 반영한 세번째 도로	
37	인천광역시 서구 한들로 3로 33 (백석동)	건물말소	20121025	한들이란 자연부락 명칭을 반영한 세번째 도로	
38	인천광역시 서구 한들로 3로 19 (백석동)	건물말소	20121025	한들이란 자연부락 명칭을 반영한 세번째 도로	
39	인천광역시 서구 한들로 3로 16 (백석동)	건물말소	20121025	한들이란 자연부락 명칭을 반영한 세번째 도로	메직크린텍
40	인천광역시 서구 한들로 3로 50 (백석동, 청우선원빌라)	건물말소	20121025	한들이란 자연부락 명칭을 반영한 세번째 도로	청우선원빌라
41	인천광역시 서구 한들로 4로 29 (백석동)	건물말소	20121025	한들이란 자연부락 명칭을 반영한 네번째 도로	고향산신
42	인천광역시 서구 한들로 4로 30-13 (백석동)	건물말소	20121025	한들이란 자연부락 명칭을 반영한 네번째 도로	
43	인천광역시 서구 한들로 4로 18-2 (백석동)	건물말소	20121025	한들이란 자연부락 명칭을 반영한 네번째 도로	
44	인천광역시 서구 한들로 4로 12-3 (백석동)	건물말소	20121025	한들이란 자연부락 명칭을 반영한 네번째 도로	백제도애견시각
45	인천광역시 서구 한들로 4로 21 (백석동)	건물말소	20121025	한들이란 자연부락 명칭을 반영한 네번째 도로	달리다움
46	인천광역시 서구 한들로 4로 23 (백석동)	건물말소	20121025	한들이란 자연부락 명칭을 반영한 네번째 도로	
47	인천광역시 서구 한들로 4로 3 (백석동)	건물말소	20121025	한들이란 자연부락 명칭을 반영한 네번째 도로	
48	인천광역시 서구 한들로 2로 6-5 (백석동)	건물말소	20121025	한들이란 자연부락 명칭을 반영한 두번째 도로	
49	인천광역시 서구 한들로 2로 61 (백석동)	건물말소	20121025	한들이란 자연부락 명칭을 반영한 두번째 도로	백석교회
50	인천광역시 서구 한들로 2로 50 (백석동)	건물말소	20121025	한들이란 자연부락 명칭을 반영한 두번째 도로	
51	인천광역시 서구 한들로 2로 4 (백석동)	건물말소	20121025	한들이란 자연부락 명칭을 반영한 두번째 도로	
52	인천광역시 서구 한들로 2로 4-1 (백석동)	건물말소	20121025	한들이란 자연부락 명칭을 반영한 두번째 도로	

53	인천광역시 서구 한동5로 23 (백석동)	건물말소	20121025	한들이란 자연부락 명칭을 반영한 다섯번째 도로	
54	인천광역시 서구 한동5로 14 (백석동)	건물말소	20121025	한들이란 자연부락 명칭을 반영한 다섯번째 도로	
55	인천광역시 서구 한동5로 8 (백석동)	건물말소	20121025	한들이란 자연부락 명칭을 반영한 다섯번째 도로	
56	인천광역시 서구 한동5로 17-1 (백석동)	건물말소	20121025	한들이란 자연부락 명칭을 반영한 다섯번째 도로	
57	인천광역시 서구 한동5로 17-1 (백석동)	건물말소	20121025	한들이란 자연부락 명칭을 반영한 다섯번째 도로	
58	인천광역시 서구 한동5로 24 (백석동)	건물말소	20121025	한들이란 자연부락 명칭을 반영한 다섯번째 도로	유성가실
59	인천광역시 서구 한동5로 28 (백석동)	건물말소	20121025	한들이란 자연부락 명칭을 반영한 다섯번째 도로	
60	인천광역시 서구 한동5로 17-13 (백석동)	건물말소	20121025	한들이란 자연부락 명칭을 반영한 다섯번째 도로	
61	인천광역시 서구 한동6로 26 (백석동)	건물말소	20121025	한들이란 자연부락 명칭을 반영한 여섯번째 도로	
62	인천광역시 서구 한동6로 9 (백석동)	건물말소	20121025	한들이란 자연부락 명칭을 반영한 여섯번째 도로	민니이가스보일러
63	인천광역시 서구 한동6로 7 (백석동)	건물말소	20121025	한들이란 자연부락 명칭을 반영한 여섯번째 도로	
64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로110번길 8-9 (석남동)	건물말소	20090922	석남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10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65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로110번길 8-4 (석남동)	건물말소	20090922	석남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10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66	인천광역시 서구 청마로34번길 39 (당하동)	건물말소	20081231	청마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34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21-128호

도로구역 결정 고시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1. 7. 12.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내용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 번호	④노선명	⑤위 치	⑥면적 (㎡)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경과지	⑩총연장 (m)	⑪폭원 (m)
결정	구도	1,838	-	인천 서구 가좌동 일원	6,764	가좌동 178-54	가좌동 178-101	-	465.5	15
결정	구도	2,009	-	인천 서구 가좌동 일원	8,498	대1-14	가좌동 178-39	-	671.6	13
결정	구도	156	-	인천 서구 석남동 일원	2,763	석남동 648	석남동 223-179	-	271.9	10
결정	구도	2,105	-	인천 서구 원창동 일원	1,710	광2-4	원창동 382-36	-	171	10
결정	구도	2,106	-	인천 서구 가좌동 일원	895	가좌동 75-21	가좌동 80-4	-	142.5	10

2. 도로구역 결정 사유 : 도시계획시설(도로) 실효에 따른 주민불편 예방 및
교통불편 해소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도로구역 결정일 ~ 2025. 12. 31.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별첨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기간) 고시일로부터 14일간
(열람장소) 서구청 도로과

첨부서류: 도로구역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

용 지 조 서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구도1838호선

일련 번호	지 번	지 목	지 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비고
					성 명	주 소	
1	178-57	도	6,764.0	6764.0	동*오*앤*즈 주식회사	인천 서구 가*동 1*3-1*1	
합 계			6,764	6,764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구도2009호선

일련 번호	지 번	지 목	지 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비고
					성 명	주 소	
1	178-205	도	18	18	공	인천광역시 서구	
2	178-190	도	720	720	공	인천광역시 서구	
3	178-133	잡	3,859	3,859	동*오*앤*즈 주식회사	인천광역시 서구 가*동 1*3-1*1	
4	178-132	잡	3,901	3,901	동*오*앤*즈 주식회사	인천광역시 서구 가*동 1*3-1*1	
합 계			8,498	8,498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구도156호선

일련 번호	지 번	지 목	지 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비고
					성 명	주 소	
1	650-40	도	2,763.1	2,763.1	하*준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문화로2*번길 2* *0*동 2*0*호 (송도동, 송도 글*밭*크 베* 디*)	
					화*교*합*회 사	인천광역시 남구 주*동 3*-3	
					신*교*주*회사	인천광역시 남구 간*동 6*6-*6	
					현*하	경기도 부천시 남구 소*동 2*5-4	
					이*재	인천광역시 서구 신*동 2*2-*0	
					송*호	인천광역시 남구 주*동 1*50 쌍*아파트 * 동 *0*호	
					박*관	인천광역시 남구 주*동 2*-*7 민*레아*트 *동 10*호	
					제물*택*주* 회사	인천광역시 서구 석*동 6*0-*6	
					김*호	서울 강동구 상*동 2*5-5	

일련 번호	지 번	지목	지 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비고
					성 명	주 소	
					이*한	서울 영등포구 당*동 4가 *1 *원*일아파트 *동 *0*호	
					장*수	인천광역시 남구 용*동 6*7-0 금*타운 * 동 *0*호	
					이*주	인천광역시 남구 선*동 3*2 뉴*올아파트 10*동 1*01호	
					이*범	경기도 부천시 오*구 원*동 2*9-6	
					손*배	경기도 과천시 중*동 *7 주*아파트 100*동 40*호	
					박*철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동 4*0-*	
					이*모	인천광역시 동구 만*동 1*2 만석*치*운 주*아파트 10*-40*	
					공*준	경기도 부천시 원*구 역*로4*번길 *6, *01 동 *05호(역*동,부*동*센*레*2단지)	
					주식회사바*어 플*텍	인천광역시 서구 중*대로 2*8(석*동)	
					주식*사기*아 트	인천광역시 서구 장*개로1*8번길 *(가*동)	
					김*진	경기도 하남시 미*강*동로 4*, 2*0*동 *05 호(풍*동,미*강*브라*스톤*에이*에프)	
					신*정	서울 동작구 동*대로2*길 *1, 20*동 1*01호 (사*동,사당우*아파트)	
					신*중	경기도 안양시 만*구 만*로9* 8*2호 (안*동.안*세*청마*주상*합)	
					왕*수	대전광역시 중구 서*로 *4, *동 *01호 (문*동)	
					장*진	서*특별시 동*구 흑*로*1길 *5 (흑*동)	
					천*희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지로 1*9, *03동 60* 호(효*,뉴*올아파트)	
					강*정	경상남도 거제시 해*로 *2, 1*2동 1*0*호(수 월*으거*자이)	
					고*식	강원도 영월군 영*읍 종리*길 10*, 10*동 *05호(금*아파트)	
					정*림	서울특별시 중*구 창*5*길 2*, 10*호(창*동,도*빌라)	
					임*수	경기도 광명시 하*로 3*8, 1*0*동 1*0*호 (하*동,고*주*아파트)	
					이*숙	경기도 군포시 번*로 *03, *04동 20*호(산*동,가*아파트)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구도156호선

일련 번호	지 번	지목	지 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비고
					성 명	주 소	
					주식회사신*중 *토건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대로 3*0 110*호(역*동,황*빌딩)	
					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대로 8*4, 1*0동 1*01호(주*동,더*드*테이*아파트)	
					배*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포로 *03, 2*0*동 60*호(구*동,롯데*골드)	
					배*	인천광역시 연*구 컨*시아대로2*4번길 *5, 2*0*동 20*호(송*동,송도*삼*스터뷰)	
					배*	인천광역시 연*구 컨*시*대로2*4번길 *5, *10*동 20*호(송*동,송도*삼*스*뷰)	

일련 번호	지 번	지목	지 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비고
					성 명	주 소	
합 계			2,763	2,763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구도2105호선

일련 번호	지 번	지목	지 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비고
					성 명	주 소	
1	382-36	도	1,709.8	1709.8	이*범	서울 강*구 화*동 9*9-*	
					정*돌	서울 구*구 구*동 6*9-1* 주*아파트 10* 동40*호	
					박*화	서울 송파구 신*동 1* 장*3차아파트*동 *10*호	
					최*철	인천광역시 북구 계*동 8*8 한*리아파트 * 동 40*호	
					임*희	경기도 안산시 상*구 반*로 *, 20*동 *05호 (본*동,신*아파트)	
					임*현	경기도 성남시 분*구 정*일로2*3번길 *9, *01동 *00*호(정*동,아*파크*당)	
					주식회사에*티 *너지	인천광역시 서구 중*대로3*6번길 *(원*동)	
					주식회사*양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금*로*길 *4(여의 * 동)	
합 계			1,710	1,710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구도2106호선

일련 번호	지 번	지목	지 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비고
					성 명	주 소	
1	75-21	도	1,003.0	166.0	공	인천광역시 서구	
2	78-42	대	7.0	7.00	서*문	인천광역시 서구 가*동 7*-1*	
3	78-41	대	10.0	10.00	서*문	인천광역시 서구 가*동 7*-1*	
4	76-7	전	498.0	498.00	원*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세*정로*길 *5, 10*동 1*0*호 (홍*동,벽*아파트)	8/10
					박*자	대전광역시 서구 괴*동 4*-*1 롯데타운 *-20*	2/10
5	78-1	도	25.0	19.00	공	인천광역시 서구	
6	80-4	전	228.0	194.00	공	인천광역시 서구	
7	81-23	도	3,369.0	1.00	공	인천광역시	
합 계			5,140	895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21-129호

롯데우람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고시 제2012-140호(2012. 6. 11.),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18-130호(2018. 9. 17.)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결정된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491-3번지 일원의 롯데우람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을 변경(경미한 변경)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인천광역시 서구 도시재생과(032-560-4592)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1. 7. 12.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1. 정비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롯데우람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2. 정비구역 및 면적(변경)

- 정비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정비사업의 구분	정비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주택 재건축사업	롯데우람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서구 석남동 491-3번지 일원	15,244.5	감)0.5	15,244.0	

○ 정비구역 변경 사유서

구분	위치	면적(㎡)			변경사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서구 석남동 491-3번지 일원	15,244.5	감)0.5	15,244.0	지적현황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변경

3.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변경)

가. 교통시설(도로)(변경없음)

○ 도로 결정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1	11	35 (35~39) [3.5]	주간선 도로	6,250 [108]	석남동 광3-9	대로 1-13	일반 도로		건고제54호 (70.02.09)	
기정	중로	1	57	20 (20~33) [2]	보조간선 도로	3,500 [172]	청천동 대3-17	석남동 대2-29	일반 도로		건고제658호 (68.10.23)	
기정	중로	3	325	12	국지 도로	70	소로 2-52	롯데우림 정비구역	일반 도로			
기정	소로	2	52	8 (8~12) [4]	국지 도로	167 [50]	소로 2-447	중로 1-57	일반 도로			
기정	소로	3	34	6 (6~10) [4]	국지 도로	363 [122]	중로 2-38	대로 1-11	일반 도로			
기정	소로	3	35	6	국지 도로	180	중로 2-38	소로 2-52	일반 도로			

※ []는 구역 내에 관한 사항, 도로개설 후 무상귀속

나. 교통시설(주차장)(변경)

○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①	주차장	서구 석남동 491-5번지 일원	368	증)0.1	368.1	-	조성후 무상귀속

○ 주차장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주차장	- 면적변경 368㎡ → 368.1㎡ 증)0.1㎡	지적현황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변경

4.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변경없음)

구분	계획	비고
기정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을 준수하여 계획	일부조항 상업지역 완화기준 적용가능

5.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층수 등에 관한 계획 (변경)

결정구분	구역구분			획지구분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층수
	명칭	면적 (㎡)		명칭	면적 (㎡)				정비계획	예정법적 상한용적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	롯데우람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구역	15,244.5	15,244.0	획지 1-1	13,029.5	13,028.2	주상복합	45.0%이하	450%이하	485%이하	84m이하
				획지 1-2	368	368.1	노외주차장	-	-	-	-
				획지 1-1	허용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 합계의 80% 미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일반업무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에 의한 제1종근린생활 시설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안마원 제외) 				
				획지 1-2	허용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차장법 제2조 제1호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획지 1-1	불허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허용용도 중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54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중심지미관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용도(중심지 미관지구에 한함) 학교보건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 시설(절대 및 상대정화구역에 한함) 				
				획지 1-2	허용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85㎡ 이하 규모의 주택을 60% 이상 건설하되 전체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이어야 함 							
	건축한계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로1-11호선변 : 6.0m 지정 중로1-57호선변 : 6.0m 지정 중로3-325호선변 : 6.0m 지정 소로2-52호선변 : 6.0m 지정 소로3-34호선변 : 6.0m 지정 인접대지경계선 : 3.0m 지정 							
변경	재건축소형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3 주택재건축사업의 용적률완화 및 소형주택(전용60㎡이하) 건설 등 규정을 준수하여 건설공급 (법적상한용적률 - 정비계획 용적률) × 30% = (485 - 450) × 30% = 10.5% 소형주택 의무 건설면적 : 기정) 13,029.5 × 10.5% = 1,368.09㎡ 이상 변경) 13,028.2 × 10.5% = 1,367.96㎡ 이상 ※ 사업시행인가 시 소형주택면적 확정으로 건설면적 변경될 수 있음. 							
	완화기준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용적률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준용적률 410.0% + 공공시설부지제공 58.7% = 468.7% - 계획용적률 : 450.0% 이하 							

6.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분	계획내용		비고
환경보전	자연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절·성토의 균형고려, 지형변화의 최소화 ○ 기존구역 내 녹지율을 향상시키는 녹지면적 확보 ○ 차폐 및 조경녹지의 확보로 비오톱 공간 확장 	
	생활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가스 등 청정연료(LNG)사용과 에너지 절약형 주거단지 조성 	
	사업시행시 환경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기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건설공사장 소음관리요령 등에 의거 저감대책 마련 	
재난방지	수재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정비구역은 평탄한 지형으로 침수 등 수재해에 대한 우려가 없으나, ○ 집중호우시 구역내로 유입되는 수량 등을 감안하여 정비구역 주변에 적정 우수관망 계획 수립 	
	산사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면에 대하여 토질의 종류에 따른 안정구배를 유지토록 하고, 벽면의 상·하단에 배수시설 설치 등을 통한 사면안정과 경관적 처리를 통하여 토사의 유출을 방지하고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계획 	
	지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진단 결과 재건축 판정(B급)을 받은 롯데 우람아파트는 지진 발생시 붕괴 등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이 있음 ○ 따라서 이를 철거하고, 철근콘크리트의 벽식구조로 건설을 하며, 내화재료 사용 및 내진설계를 통한 설계시행이 필요 	
	화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비구역 내 화재발생을 대비한 방화계획은 건축법의 방화에 관한 규정 및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종합적 방재계획 수립 	

7.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본 정비구역 반경 500m 이내에 석남초등학교, 천마초등학교, 가좌여자중학교, 경인여자고등학교가 입지하고 있으며, 상대정화구역에 속함
- 따라서 교육환경을 보호하도록 금지행위나 불허시설들을 설치하지 않도록 하겠음
- 주변 학교의 학생수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므로 본 사업시행에 따른 학교 신설 계획은 없으며, 인천광역시 교육청 협의 후 부담금 등의 의견을 수렴하겠음
- 가장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가좌여자중학교와의 거리는 약 60m로 공사착공전 설계도면에 따른 학교부지의 예측일조량을 실시하여 일조량에 의한 학습 환경 지장여부에 관하여 충분히 검토하겠음
- 본 사업시행에 따른 학생들의 통학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사 착공 전 정비구역 진출입도로에 교통안전시설물(가드펜스, 반사경, 점멸등)을 설치하겠음

8. 세입자 주거대책(변경없음)

-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이하)이하의 소형주택 위주로 공급
 - 소형주택(전용면적 60㎡이하)
- 향후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30조 4호에 의하여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대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조합설립 후 조합정관에 명시하고, 향후 사업시행시 변경이 될 수 있음
 - 세입자 주거 이전비, 분양 시 우선순위 선정
 - 정비사업 시행으로 기존 거주자인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장 등)일반 이주대상자와 달리하여 이주대책 및 생활보상에 대한 대책마련
 - 거주자, 거주세입자로 구분하여 현실적인 이주 및 보상비 지급에 대한 대책마련
 - 향후 이주 시 토지등소유자와 세입자간의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대책 수립

9. 정비사업시행계획(변경없음)

- 시행방법 : 관리처분 방법
- 시행예정시기 : 정비구역지정 고시가 있는 날부터 3년 이내의 범위 안에 사업시행인가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계획(필요한 경우에 한한다)(변경)

가. 용도지역·지구 변경에 관한 계획

1) 용도지역(변경)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15,244.5	감)0.5	15,244.0	100.0	
일반상업지역	15,244.5	감)0.5	15,244.0	100.0	

○ 용도지역 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	결정(변경) 사유
			기정	변경후		
-	서구 석남동 491-3번지 일원	일반상업지역	15,244.5	15,244.0	100.0	지적현황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변경

2) 용도지구(변경없음)

○ 용도지구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치	면적 (㎡)	연장 (m)	폭원 (m)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	미관지구	중심지 미관지구	대로1-11 중로1-15	3,804.8	256.3	15	-	구역내 해당내용

11.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변경)

결정 구분	지구 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이주	
기정	롯데우림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15,244.5	획지1	13,029.5	서구 석남동 491-3번지 일원	9	-	-	9	-	
변경		15,244.0		13,028.2							

12.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변경없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 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참조

13. 2개 이상 구역으로 분할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분할에 관한 계획

- 해당없음

14.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분	위치		계획내용	계획목표	비고
건축 한계선	획지1-1	도로변	폭 6m 지정	◦ 건축한계선 지정에 따른 개방감 확보	
		인접대지경계선	폭 3m 지정		

15.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에 관한 결과(변경없음)

-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참조

16.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주택수급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정비구역 추진현황

구역명	정비사업유형	구역면적	지정고시일	사업시행예정시기	비고
계	-	288,821.7	-	-	
석남 2	주택재개발사업	51,447	2009. 06. 01	구역지정 일로부터 3년 이내	
석남 3	주택재개발사업	20,450	2009. 09. 21	구역지정 일로부터 3년 이내	
석남 4	주택재개발사업	72,269	2009. 06. 15	구역지정 일로부터 3년 이내	
석남 5	주택재개발사업	58,652	2009. 09. 28	구역지정 일로부터 3년 이내	
가좌주공2차	주택재건축사업	74,974.3	2009. 11. 30	구역지정 일로부터 3년 이내	
청천3	주택재건축사업	11,029.4	2009. 06. 15	구역지정 일로부터 3년 이내	

- 주택수급현황

- 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한 정비구역 내 주민들의 이주를 위한 주택수급은 양호

[단위 : 가구(5년별)]

구분	주택점유 유형별 가구								비고
	계	자가	전세	보증부월세	무보증월세	사글세	무상	미상	
인천시	823,023	498,592	175,978	109,010	14,583	3,692	21,168	-	
중구	30,559	16,459	7,103	3,831	808	219	2,139	-	
동구	24,990	15,064	4,724	4,021	432	138	611	-	
남구	141,955	82,570	31,096	20,296	3,561	926	3,506	-	
연수구	84,744	50,029	15,711	13,460	3,806	221	1,517	-	
남동구	120,028	70,688	27,593	16,607	1,554	407	3,179	-	
부평구	175,716	104,474	37,996	27,415	1,856	796	3,179	-	
계양구	102,176	66,187	22,926	10,234	845	335	1,649	-	
서구	116,758	72,857	26,545	12,232	1,232	456	3,436	-	
강화군	21,045	16,738	2,109	761	300	147	990	-	
옹진군	5,052	3,526	175	153	189	47	962	-	

※ 자료출처 : 통계청 인구주택 총조사보고서(2010년도)

17.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사항(변경)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지		비고	
		기정	변경	획지	면적(㎡)		
					기정		변경
-	1	15,244.5	15,244.0	1-1	13,029.5	13,028.2	주상복합용지
				1-2	368	368.1	주차장

※ 도로는 별도로 가구계획 및 획지계획을 수립하지 않음

18. 기존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변경없음)

- 기존 수목의 보전·이식 등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나무은행 운영계획

구분	수목현황 및 활용계획
현황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지는 도심지로서 환경부 법적 보호종 및 보호수 등은 조사되지 않음 ○ 본 사업구역은 일반상업지역으로 특별한 녹지는 존재하지 않음 ○ 아파트 단지지역에 식재된 수목은 단풍나무, 은행나무, 아카시아나무, 잣나무, 감나무, 대추나무 등 총 260주가 분포함
향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지내 활용 가능한 수목은 약 56주임 ○ 사업시행전 인천광역시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에 관한 조례 제11조(개발사업 등에 대한 조치) 및 제12조(나무은행)에 의거하여 수목현황 및 활용계획서에 제출하여 수목의 재활용 등에 관한 협의를 득하겠음

19.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본 계획에 별도로 언급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기존의 법규나 인천광역시 조례 및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등의 협의 사항을 준용함
- 교통처리계획

구분	교통처리계획	비고
차량출입 불허구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한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을 위해 차량출입불허구간을 지정함(단, 비상차량은 차량출입불허구간에서의 출입을 허용함) ○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참조 	교통영향평가에 따른 변경 (종합개선안도 참조)

20. 관련서류

- 열람편의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재생과에 관계서류를 비치하고 열람하고 있습니다.(관련도면 게재 생략)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21-130호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

인천 서구 원당동 1018번지(검단신도시 AB16블록) 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 『주택법』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제4항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내용을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15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 7. 12.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사 업 명 : 인천 서구 원당동 1018번지(검단신도시 AB16블록) 공동주택 신축
2. 사업주체 : (주)대우건설
3. 사업시행 및 면적규모
 - 가.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1018번지(검단신도시 AB16블록)
 - 나. 대지면적 : 85,540㎡
 - 다. 사업규모 : 연면적 284,249.74㎡ (지하2층, 지상29층)
 - 라. 용 도 : 공동주택(아파트) 16개동 및 부대·복리시설
 - 마. 세 대 수 : 1,540세대
4. 사업기간 : 2019. 1. 20. ~ 2021. 8. 31.
5. 변경사항
 - 가. 원당동 검단신도시 AB16블록 → 원당동 1018번지
 - 나. 아파트 동번호 변경
(변경전) 101동 ~ 116동 → (변경후) 3201동 ~ 3216동

※ 인천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 1단계(1-1공구) 예정지번 부여 및 블록별 단지번호 지정사항 반영

6.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에 따른 의제처리사항

- 건축법 제16조에 따른 건축허가사항 변경허가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21-1235호

입 법 예 고 문

「인천광역시 서구 서로이음 아이돌봄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7. 12.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자치법규명 : 인천광역시 서구 서로이음 아이돌봄 지원 조례 제정안

2. 조례 제정 취지

지금까지 분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초등학생 이하 대상 아이 돌봄 서비스 및 시설 운영을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체계인 서로이음 아이돌봄으로 전환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사회 모두가 함께 공동의 책임감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서구형’ 온종일, 온마을 돌봄 환경 구축을 실현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서로이음 아이돌봄의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 규정(안 제2조 및 제3조)
- 돌봄정책의 종합계획 수립 및 돌봄사업 지원, 비용 등 규정(안 제4조 부터 제7조까지)
- 돌봄 공간의 설치 및 운영과 위·수탁, 안전 등 규정(안 제8조부터 제 10조까지)
- 서로이음 아이돌봄협의회 설치, 구성 및 임기 등에 대한 규정(안 제11 조부터 제18조까지)

- 돌봄 시설 관계자 교육 및 역량 강화, 지도점검 등에 관한 규정(안 제 19조부터 제21조까지)

4.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년 8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서 기재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 제출방법 : 방문 제출, 우편 및 팩스, 이메일 등
 - 방문제출 : 인천광역시 서구청 아동행복과 아이돌봄지원팀(제2청사 5층)
 - 주소 : (우편번호 22726)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심곡동)
인천광역시 서구청 아동행복과 아이돌봄지원팀 담당자
 - 팩스 / 이메일 : 032-560-2740 / elsid@korea.kr
- ※ 연락처 : 032)560-4421 (팩스 및 이메일 제출 시 수신 여부 확인 바랍니다.)

5.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서구 서로이음 아이돌봄 지원 조례」 제정안 1부.
- 의견제출서(작성서식) 1부.

인천광역시 서구 서로이음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이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온종일, 온마을 아이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로이음 아이돌봄”이란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아이 돌봄 통합 체계 명칭을 말한다.
2. “돌봄 아동”이란 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초등학생 이하의 아동이나, 구에 소재한 초등학교 등에 재학 중인 아동 중에서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3. “돌봄”이란 초등학교 등의 정규학습 시간 외 돌봄 아동에게 필요한 교육, 보호 및 양육 등의 지원을 말한다.
4. “돌봄 지원”이란 돌봄 아동에게 제공되는 안전한 보호, 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 급식·간식 등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5. “돌봄 시설”이란 돌봄 아동에게 돌봄 서비스를 지원할 목적으로 구, 기관, 단체, 개인 등이 운영하는 시설의 돌봄교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돌봄 아동의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안정적인 지원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돌봄 종합계획 수립) 구청장은 초등학생 이하 돌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돌봄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돌봄 지원을 위한 정책 방향 및 추진 목표
2. 돌봄에 관한 재원 조달 및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3. 돌봄 시설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
4. 돌봄에 관한 관계 기관 간의 상시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돌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돌봄 사업 지원) 구청장은 돌봄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확대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돌봄 시설 확충 및 지원 사업
2. 돌봄 서비스 및 프로그램 확대 사업
3. 돌봄 통합지원 체계 구축 사업
4. 돌봄 민·관 협력과 지역 연계 사업
5. 돌봄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6. 돌봄 인력 양성 과정 지원 사업
7. 돌봄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조사 사업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6조(돌봄 서비스 및 프로그램 지원) ① 돌봄 아동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돌봄 서비스 및 프로그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휴식

2. 아동을 위한 문화·예술·체육 등 체험활동
3. 방과 후 급식·간식
4. 학업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보조 활동
5. 감염병 확산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돌봄 아동에 대한 일시·긴급 돌봄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돌봄 서비스 및 프로그램

② 구청장은 양질의 돌봄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수 있다.

제7조(돌봄의 우선 제공)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돌봄 서비스 및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

1. 「아이돌봄 지원법」 제1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돌봄 아동
2. 그 밖에 구청장이 우선적으로 방과 후 돌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돌봄 아동

제8조(돌봄 시설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돌봄 수요와 시설 공급을 적정하게 고려하여 돌봄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돌봄 시설 설치 시 안전·환경 및 교통편의, 공간 활용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
2. 초등학생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는 곳으로 선정
3.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우선 설치 검토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으로 선정

② 지역 사회 돌봄 관련 시설과 연계·확대하여 아동 돌봄 시설로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위탁운영 등) ① 구청장은 돌봄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그 밖의 비영리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돌봄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준 및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보험 및 안전교육) ① 구청장은 돌봄 시설 및 돌봄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이용 아동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

③ 관계 공무원은 돌봄 관계자를 대상으로 연 1회, 1시간 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교육을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서로이음 아이돌봄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지역 돌봄 시설 간 돌봄 서비스 연계·협력 강화 및 돌봄을 증진하기 위하여 서로이음 아이돌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 돌봄 운영 계획 및 추진사업 심의·자문
2. 돌봄 시설 안전 및 아동보호 협력 체계 구축
3. 돌봄 시설 간의 연계 및 조정
4. 관련 기관과의 돌봄 공동 수요조사 실시
5. 돌봄 서비스 홍보 및 돌봄 관계자 공동 교육
6. 돌봄 시설 간 우수사례 발굴
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제12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인천광역시 서부경찰서의 아동·청소년 업무 담당 부서의 장
3. 인천광역시 서부소방서의 시설 안전 관리 담당 부서의 장
4. 인천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돌봄 관련 부서의 장
5. 구 소속 관계 부서의 장
6. 돌봄 시설 운영 대표자
7. 관내 초등학교 재학생의 학부모
8. 그 밖에 아동 돌봄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협의회는 민·관 협력 돌봄 사업 추진의 효율적 운영 및 시설 간 유기적 협업을 위하여 실무추진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위원의 임기)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협의회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6조(위원장의 직무와 그 대행)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해당 협의회의 정기 회의를 연 2회 개최할 수 있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하며, 간사 1명을 두되, 돌봄 지원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8조(수당 등)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돌봄 시설 관계자의 교육 및 역량강화) 구청장은 돌봄 관계자의 전문성 향상 및 우수사례 견학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및 워크숍을 실시할 수 있다.

제20조(지도·감독)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예산이 지원되는 돌봄 시설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포상) 구청장은 돌봄 시설 확충 및 민간 협력 돌봄 사업 활성화에 공로가 있는 개인,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21-1250호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 7. 12.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정비하고, 조직개편을 반영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등을 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기금운용 및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의 조문 신설 (안 제2조)

나. 기금의 용도 보완(안 제6조)

다. 조직개편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정비(안 제10조)

라. 위원회의 심의사항 대상 정비 (안 제11조)

마. 그 밖에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년 8월 2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안전총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32-560-2883, 팩스 032-560-2735)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제안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정비하고, 조직개편을 반영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등을 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기금운용 및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정의 조문 신설 (안 제2조)
- 나. 기금의 용도 보완(안 제6조)
- 다. 조직개편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정비(안 제10조)
- 라. 위원회의 심의사항 대상 정비 (안 제11조)
- 마. 그 밖에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별첨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가정보육과, 감사담당관 및 기획예산담당관과 사전협의

인천광역시 서구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및 제5조를 각각 삭제하고, 제2조 및 제3조를 각각 제4조 및 제5조로 하며, 제2조 및 제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법정적립액”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 67조에 따라 매년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으로 적립하는 금액을 말한다.
2. “의무예치액”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에 따라 금융회사 등에 예치한 금액을 말한다.
3. “사용가능액”이란 법정적립액에서 의무예치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과 이자 등으로 발생한 운용수입금액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1호 각 목에 따른 재난의 대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한다.

제4조(종전의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67조에 따른 적립금
2. 기금의 운용 수입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매년 조성된 기금을 인천광역시 서구 금고(이하 “구금고”라 한다)에 전용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누계잔액(매년 적립하여야 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영 제75조제2항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 금액을 의무예치액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③ 사용가능액은 제6조에 따라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
- ④ 사용가능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되어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기금의 용도) 영 제74조제1호에 따른 기금의 공공분야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영 제74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1.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 설치

2. 인명구조장비 등 안전장비 확보
3.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4. 재난관련 장비 및 물품 구입
5.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6. 안전문화 육성 및 지원 활동사업
7.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서구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보수·보강
8.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 체계의 구축·운영
9. 재난피해시설(서구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10. 지방자치단체의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11.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12.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
13.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발생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14.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회복을 위한 상담활동
15.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이하 “대피명령 등”이라 한다)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용자
16. 영 제74조제2호에 따른 안전조치 비용

17.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제1항 중 “영 제74조제8호”를 “법 제40조부터 법 제42조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40조부터 법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로 한다.

1. 기금운용관: 재난관리기금업무 담당 부서장

2. 기금출납원: 재난관리기금 업무 담당

제10조의 제목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인천광역시”를 “구청장 소속으로 인천광역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9명”을 “1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재난업무 담당과장”을 “재난관리기금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중전의 제6항) 중 “안전총괄과 재난관리기금”을 “재난관리기금업무”로, 같은 조 제8항(중전의 제7항) 중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수가 특정 성별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 안전총괄과장, 기획예산담당관, 경제정책과장, 도로과장, 건축과장

2. 위촉직 위원 : 방재 관련 분야, 기금 등 재정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1조제1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1조제5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기금의 조성 및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4. 기금의 관리와 운용에 필요한 사항

5.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제14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신 설></u></p>	<p><u>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법정적립액”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법 제67조에 따라 매년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기금으로 적립하는 금액을 말한다.</u> <u>2. “의무예치액”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에 따라 금융회사 등에 예치한 금액을 말한다.</u> <u>3. “사용가능액”이란 법정적립액에서 의무예치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과 이자 등으로 발생한 운용수입금액을 말한다.</u>
<p><u><신 설></u></p>	<p><u>제3조(기금의 설치)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1호 각 목에 따른 재난의 대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한다.</u></p>
<p><u>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각 호의</u></p>	<p><u>제4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u></p>

재원으로 조성한다.

-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적립금
- 2.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수익금
- 3. 그외수입 등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이하“령”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에 따라 법정적립총액의 100분의 15 이상 금액(이하 “의무예치금액”이라 한다)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해당년도 사용가능액”이라 한다)는 재난기금의 용도에 따라 사용될 수 있도록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신 설>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1. 법 제67조에 따른 적립금
- 2. 기금의 운용 수입금
- 3. 그 밖의 수입금

제5조(기금의 운용 및 관리)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매년 조성된 기금을 인천광역시 서구 금고(이하 “구금고”라 한다)에 전용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누계잔액(매년 적립하여야 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

<신 설><신 설>

제4조(의무예치금액의 예치·관리)
의무예치금액은 인천광역시 서구의 지정금고(「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가능액의 운용·관리) ①
사용가능액은 제6조에 따라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

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영 제75조제2항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 금액을 의무예치액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용가능액은 제6조에 따라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

④ 사용가능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삭 제><삭 제>

② 사용가능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용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금을 사용할 수 없다.

1.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 설치
2. 인명구조장비 등 안전장비 확보
3.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4. 재난관련 장비구입
5. 자동우량경보시설,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재해문자전광판, 산간계곡 자동경보시설, 지진가속도 계측시설 등 재난 예보·경보시설의 설치·보수·보강사업
6.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 계측시설의 설치·보수·보강사업
7. 호우·태풍·대설·지진 등에 의한 피해시설의 긴급조치 및 응급복구
8.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임시 용수 확보사업
9. 설해대비 제설용 자재구입 및 응

제6조(기금의 용도) 영 제74조제1호에 따른 기금의 공공분야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영 제74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1.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 설치
2. 인명구조장비 등 안전장비 확보
3.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4. 재난관련 장비 및 물품 구입
5.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6. 안전문화 육성 및 지원 활동사업
7.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서구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보수·보강
8.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 체계의 구축·운영
9. 재난피해시설(서구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에 대

급복구 장비구입 또는 임대

10.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비상대처 계획수립,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11. 재해원인분석, 침수조사, 특정관리 대상시설 안전진단
12. 재난·재해피해지역 공간영상자료수집 및 항공사진측량
13. 안전문화 육성 및 지원 활동사업
14. 영 제74조에 규정된 사항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용자 등) ① 영 제74조제8

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10. 지방자치단체의 긴급구조능력확충사업
11.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12.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등을 위한 조사·연구
13.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발생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14.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회복을 위한 상담활동
15.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이하 “대피명령 등”이라 한다)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용자
16. 영 제74조제2호에 따른 안전조치 비용
17.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용자 등) ① 법 제40조부

호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필요한 실비를 지원한다.

② 법 제40조부터 법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임차비용 용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퍼센트 이하로 하고, 용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용자기금 규모와 용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③ (생략)

제9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

- 1. 기금운용관 : 재난업무 담당과장
- 2. 기금출납원 : 재난관리기금 담당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

터 제42조까지의 규정-----

② 제1항에 따른-----

③ (현행과 같음)

제9조(회계공무원) ① -----

- 1. ----- 재난관리기금업무 담당 부서장
- 2. ----- 재난관리기금업무

② -----
-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

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과 민간전문가 3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④ 구청장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인천광역시 서구 소속 국·실·과장과 민간전문가를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위원으로 위촉하며, 공무원은 재직기간을 임기로 하고, 민간전문가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생략)

-----.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

----- 구청장 소속으로 인천광역시 -----
-----.

② -----
----- 10명 -----.

③ -----
----- 재난관리기금업무 담당 국장-----
-----.

④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수가 특정 성별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안전총괄과장, 기획예산담당관, 경제정책과장, 도로과장, 건축과장

2. 위촉직 위원: 방재 관련 분야, 기금 등 재정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안전총괄과 재난관리기금 담당이 된다.

⑦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기금의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 2. 3. (생략)
- 4.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신 설>

5. (생략)

제14조(준용) 기금의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하여는 「인천광역시 서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⑦ -----
----- 재난관리기금
업무 -----.

⑧ -----범위-----

-----.

제11조(위원회의 심의사항) -----
-----.

- 1. 기금의 조성과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 2. 3. (현행과 같음)
- 4. 기금의 관리와 운용에 필요한 사항
- 5.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 6. (현행 제5호와 같음)

<삭 제>

관계법령 발취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

제74조(재난관리기금의 용도) 법 제68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 보조금에 관한 예산이 확정된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
 - 나.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드는 비용. 다만, 응급 복구 및 긴급한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한다.
2.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조치 비용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
 - 가.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 1)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일 것
 - 2)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
 - 나.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

[전문개정 2020. 1. 7.]

의 건 제 출 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 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 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와 이익 침해 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 6. 기타 문제점		
실·국(군·구)별 의견			
협의개요	실·국별	제 출 의 건	검 토 내 용

